

기본연구보고서 2014-16

대전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방안

장 창 수



연구진

연구 책임

- 장창수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머리말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 향상을 통한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저소득 빈곤계층이 단순히 정부의 구호에만 의지하여 빈곤이 세습화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본인 스스로 근로능력 향상을 통한 탈빈곤을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에서 자활사업은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접촉하고 이들의 자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에는 각 구별로 5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이곳을 통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2,490여 명이며, 현재 45개의 자활사업단과 33개의 자활기업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대전지역 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심리적 및 정서적 자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대전시가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가 복지행정 실무자들에게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11

대전발전연구원장 유 재 일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5
제2장 지역자활센터 관련 문헌고찰	9
제1절 지역자활센터의 개념	11
제2절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자활사업	1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7
제3장 대전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23
제1절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5
제2절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27
제3절 대전광역시자활센터 설립 운영	49
제4절 지역자활센터 운영 평가와 시사점	52
제4장 조사결과 분석	57
제1절 조사개요	59
제2절 지역자활센터 조사결과	6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99
제2절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12
부록 :	115

- 표 목 차 -

<표 2-1> 지역자활센터 지정 현황	12
<표 2-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과 관련 선행연구	19
<표 3-1>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2013. 12. 31)	25
<표 3-2>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2013. 12. 31)	26
<표 3-3> 동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28
<표 3-4> 동구지역자활센터 2013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실적	29
<표 3-5> 동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30
<표 3-6> 동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31
<표 3-7> 동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자활기업 운영 현황	31
<표 3-8>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33
<표 3-9>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	34
<표 3-10>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35
<표 3-11>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	35
<표 3-12>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자활기업 운영 현황	36
<표 3-13> 서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38
<표 3-14> 서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 실적	39
<표 3-15> 서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39
<표 3-16> 서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 현황	40
<표 3-17> 서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자활기업 운영 현황	41
<표 3-18> 유성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43
<표 3-19>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44
<표 3-20>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44
<표 3-21> 2013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46
<표 3-22> 2013년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 추진실적	47
<표 3-23>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47

<표 3-24>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48
<표 3-25> 2014년 자활기업 운영 현황	48
<표 3-26> 대전지역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표	52
<표 3-27>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56
<표 4-1> 성별 분포도	65
<표 4-2> 연령 분포도	66
<표 4-3> 가족수 분포도	66
<표 4-4> 학력별 분포도(중퇴 및 재학도 졸업에 포함)	67
<표 4-5> 가구주 여부	67
<표 4-6> 결혼 상태	68
<표 4-7> 주관적 건강상태	68
<표 4-8> 질병 또는 장애로 겪는 불편 정도	69
<표 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위	69
<표 4-10>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의 종류	70
<표 4-11>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무 현황	70
<표 4-12>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의 유형별 분류	71
<표 4-13> 지난 2~3년 동안 자활사업 참여 도중 변경 경우	72
<표 4-14> 자활급여에 대한 만족정도	72
<표 4-15> 자활사업장 작업환경 만족도	73
<표 4-16> 자활사업장 출퇴근거리 만족도	73
<표 4-17> 자활사업 업무량 만족도	74
<표 4-18> 자활사업장의 근무시간 및 날짜(일수) 만족도	74
<표 4-19> 자활사업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5
<표 4-20> 자활사업 만족도	76
<표 4-21> 성별에 따른 자활사업 만족도 차이	77
<표 4-22> 연령대에 따른 자활사업 만족도 차이	77

<표 4-23> 자활 유형에 따른 자활사업 만족도 차이	78
<표 4-24> 자아존중감의 변화	79
<표 4-25> 직무능력의 변화	80
<표 4-26> 우울감의 변화	81
<표 4-27> 사회적지지의 변화	82
<표 4-28>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참여자로부터 지지도 변화	83
<표 4-29>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	84
<표 4-30>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의지의 변화	85
<표 4-31> 문제 음주행동	86
<표 4-32> 노후준비 수준	87
<표 4-33> 노후준비의 필요성	88
<표 4-34> 노후대비 준비교육 경험 여부	88
<표 4-35> 연령에 의한 노인의 구분	89
<표 4-36> 노후준비를 위한 주체	89
<표 4-37>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0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체계도	7
<그림 3-1> 동구지역자활센터 조직표	27
<그림 3-2> 중구지역자활센터 조직표	32
<그림 3-3> 서구지역자활센터 조직표	37
<그림 3-4> 유성지역자활센터 조직표	42
<그림 3-5> 대덕구지역자활센터 조직표	45
<그림 3-6> 대전광역시자활센터 조직도	50
<그림 4-1> 자활사업 만족도	76

<연구결과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근로역량을 높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자활근로사업은 대표적인 근로복지연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노력으로 자활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평가지표인 탈수급율이 약 10% 정도이며, 자활성공율이 약 2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반영하면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성과를 결과적 측면으로서 경제적 성과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 주민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자활의욕 고취 등 심리·사회적 변화와 같은 자활사업의 과정적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자활사업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있지만 지자체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고, 자활기금 활용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조사결과 분석

1) 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1) 인구학적 특성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약 880여 명 중에서 314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성별 분포도는 여성이 75.2%, 남성이 24.8%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도는 40대가 41.7%로 가장 많고, 50대가 39.2%, 60대 이상이 11.1%, 30대가 5.7%, 20대가 2.2%의 순서이며, 가족 수는 3명이 32.8%로 가장 많고, 2명이 22.9%, 4인 이상이 19.4%, 1인 단독가구가 15.6%, 5명이 6.1%, 6명 이상이 3.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0%로 가장 많고, 중학교 졸업이 18.5%,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이 16.2%, 초등학교 졸업이 13.4% 등이며, 조사대상자들의 80.6%가 가구주이고, 가구원이 19.4%로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9.4%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30.6%보다 높았다.

(2) 자활사업 참여 실태 및 만족도

조사대상자 본인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54.5%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건강이 좋다는 응답자가 18.5%, 나쁘다는 응답자가 27.0%로서 건강이 좋다는 응답보다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근로활동에 있어서 몸에 질병 또는 장애가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21.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위는 조건부수급자가 63.1%, 차상위자가 26.8%, 일반수급자가 10.2%의 순서이며,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종류는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단이 74.8%가 가장 많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가 13.1%, 게이트웨이가 8.9%, 파일럿사업(시범사업)이 3.2%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업단에서 근무한 평균 개월 수는 15개월(1년 3개월)이며, 하루 일당은 평균 33,681원이다. 연령은 최소 20세이고, 최대 65세이며, 평균은 49.2세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의 유형별 분포도는 돌봄사업단이 34.1%로 가장 많고, 제조 및 판매사업이 32.5%, 청소사업이 17.2%, 기타(게이트웨이 등)이 12.1%, 주거복지사업이 4.1%의 순서를 보였다. 이들이 지난 2~3년 동안 자활사업

참여 도중에 사업단이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경우가 49.7%, 게이트웨이에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로 변경된 비율이 24.1%,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된 경우가 7.0%, 게이트웨이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과 파일럿(시범사업)사업으로 변경된 비율이 각각 6.3%, 자활기업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된 경우가 3.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동료와의 관계가 3.62점으로 가장 높고, 근무일수 및 날짜(일수)가 3.54점, 출퇴근거리가 3.37점, 업무량이 3.27점으로 이론적 평균치인 3.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2.21점, 작업환경이 2.9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활사업의 심리적·정서적 자활성과

① 자아존중감

조사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15개월(1년 3개월)이다. 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 사업단 유형 및 사업종류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이 2.93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복지사업이 2.79점, 기타(시범사업 등)사업이 2.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유형별로는 게이트웨이가 가장 낮고 사회서비스형이 가장 높아서 아래 단계에서 상위단계 사업종류로 전환될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직무능력 변화

조사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직무능력이 이론적 평균점수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사업단 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사업 참여자들이 3.31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들

이 2.89점으로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③ 우울감

조사대상자들이 느끼고 있는 우울감 정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학력별, 사업단 유형별로, 사업종류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상보다 중졸 이하가 우울감이 높았고,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단이 1.75점으로 우울감이 가장 낮았고, 주거복지사업단이 2.17점으로 우울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종류별로는 게이트웨이가 가장 높았고, 시장진입형이 가장 낮게 나타나서 하위 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진입할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④ 사회적지지

조사대상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 사업단유형별, 사업종류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2.98점)보다 여성(3.27점)이 사회적지지가 높았다. 사업단유형별로는 돌봄사업(3.41점)이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2.36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종류별로는 시장진입형(3.31점)으로 가장 높고, 게이트웨이(2.56점)가 가장 낮았다. 즉 사업종류에서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진입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참여자로부터 지지도 변화

조사대상자들이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참여자들로부터 느끼는 지지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사업단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사업이 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복지사업이 2.62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⑥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 변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연령별, 사업단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40대(3.15점)보다 50

대 이상(3.34점)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3.47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2.69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⑦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의지의 변화

조사대상자들의 일에 대한 태도와 자립의지는 이론적 평균점수인 3.0점을 넘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 사업단 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63점)보다 여성(3.87점)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3.99점)이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3.44점)이 다소 낮았다.

⑧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감과 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자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 감소할수록($\beta = -.242$), 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증가할수록($\beta = -.268$) 자활사업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활사업 참여자의 문제 행동 및 노후대비 인식

① 문제 음주행동

조사대상자들의 문제 음주행동에 대한 조사결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있는 경우가 1주일에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자가 8.0%(25명)로 나타났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 음주행동이 있는 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지 않지만, 본인 및 주변 참여자들의 자활 자립 의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② 노후 준비 수준 및 필요성 인식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 수준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6.0%이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하였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는 응답이 68.5%,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14.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③ 노후 대비 준비교육

조사대상자들이 노후 대비 준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4.8%, 교육을 몇 번 받아보았다는 응답이 39.2%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상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것을 감안하면, 노후대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관계자 의견조사

지역자활센터장과 실장, 대전광역시자활센터장과 사무국장, 대전자활협의회장과 사무국장, 대전시 해당부서 담당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지자체에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 관련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의 활용이 미흡하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운용하는 기금이다. 대전의 경우 자활기금을 사업단의 점포임대보증금 대출로만 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활기금의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3)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등 빈곤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위기가정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연계복지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4)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본시설 및 운영지원이 미흡하다.

지역자활센터가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인프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지원과 운영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이직율이 높고,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지역자활센터는 지방이양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3. 정책제언

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이념에 따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시·군·구 지역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역할과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한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내용에는 자활지원계획 수립, 사업자금 융자 및 우선구매, 자

활지원위원회 설치, 지역특색에 맞는 자활사업 발굴지원 등의 지원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시행규칙도 마련하여 실제적인 조례운용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2) 자활기금 지원요건의 현실화방안 모색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에 의하면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비,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금이 일정한 금액에 도달되기 전까지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계속 적립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금의 적립이 적정규모에 미달하여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만으로는 사업수행 비용이 부족하므로 현재 적립된 기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자활기금을 조속하게 조성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금품의 지급, 사업자금 대여,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생산품의 품질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대표적인 자활사업 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열악하며, 이직율이 높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역자활센터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 인건비를 비교하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임금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임금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용복지연계사업인 자활사업은 업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

자의 인건비를 최소화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4) 자활사업의 심리적·정서적 자활 성과 제고방안 모색

자활사업의 성과를 취업을 통해서 탈수급율을 높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자활사업 성과 도출에만 맞추다 보면 심리적 및 정서적 자활의 성과를 간과할 수 있다. 경제적 자활의 성과보다 더욱 의미 있는 성과가 심리적 및 정서적 자활이다.

향후에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를 평가할 때 결과적 측면인 경제적 자활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자활사업이 수행해 왔던 전문적인 사례관리적 접근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서 결과적 측면의 경제적 자활보다 과정적 측면인 심리적·정서적 자활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5) 맞춤형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문제 음주행동을 갖고 있는 조사대상자가 8%(25명) 정도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86.0%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 준비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주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문제 음주행동은 본인 및 주변 참여자들의 자활 자립 의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건소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절주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후 대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돕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노후 대비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주민 특성상 노후 대비 교육프로그램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자활센터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노후 대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운영하는 대표적인 자활사업수행 및 지원기관이다.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2000년까지 70개소에 불과했으나, 2014년 현재 전국에 247개 기관이 지정·운영되어 3배 이상 확대되어 왔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 및 지원하는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근로역량을 높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 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한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자, 일반수급자 중에서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자활센터의 게이트웨이(Gate Way)과정에 참여하여 적성, 욕구, 능력, 여건 등 개인 역량을 탐색하고, 기본 소양교육을 통해 개인별 자립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역량에 맞는 적합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자활사업 수행기관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본부는 취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며 자활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업·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 재활용·음식물 재활용 등 5대 전국 표준화사업을 기본으로 정부재정사업의 연계와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근로여건과 의지가 충분하게 높아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운

영하는 공동창업 모델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주고,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노력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자활사업은 참여자 확대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인원은 2005년 91,067명에서 2008년 71,094명으로 21.9% 감소한 이후 2009년 77532명, 2011년에 8,3710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자활기업도 2005년에 3,143개소에서 2008년 8,072개소, 2011년 10,166개소까지 3배 정도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a, 2012).

자활사업이 이처럼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이에 대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탈수급율 지표이다. 탈수급률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탈피한 비율이다. 탈수급률은 2005년 5.5%, 2006년 6.0%, 2008년 6.7%, 2010년 9.0%, 2011년 10.0%로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그러나 탈수급율은 해당연도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분모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 해에 신규 수급자가 다수 참여할수록 탈수급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광범위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탈수급율에 취업 및 창업자를 합산한 지표로 ‘자활성공율’을 제시했다. 자활성공율은 2007년 14.0%, 2008년 15.0%, 2009년 16.9%, 2010년 19.7%, 2011년 21.8%로 산정되어 탈수급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2a). 10%의 탈수급율이나 20% 수준의 자활성공율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할 때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자활사업의 성과를 위와 같이 결과적 측면으로서 경제적 성과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적 측면으로서 저소득 주민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자활의욕, 사회관계망 확충 등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변화를 자활성과 분석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이상록, 2003; 정원오·김진구, 2005; 한상진·김용식, 2007; 박정호, 2010). 따라서 자활사업의 과정적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서비스의 품질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자활사업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 유사직종에 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이 열악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있지만 지자체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고, 자활기금 활용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상기에 제기된 문제를 근거로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근무실태 및 자활사업의 만족도, 자활사업의 심리적·정서적 자활성과 등을 파악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과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주민의 근무실태와 심리적·정서적 자활성과를 파악하여 자활정책 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와 참여 주민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와 경제적,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조사를 통해 기술적·서술적 접근방법에 의해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관련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연구의 개념적 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

로 대전시 5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실태와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설문조사

대전광역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전광역시 5개 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약 880여 명 중에서 314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개 지역자활센터직원들의 협조로 자활사업 참여자 월례회의 및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참석 대상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전문가 조사

대전광역시 5개 지역자활센터와 1개 광역자활센터장과 실장, 대전광역시 해당 실무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그룹 인터뷰(FGI)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전문가클로키움을 개최하였다.

2.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과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보고서의 구성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에 관한 문헌고찰로서 지역자활센터의 개념과 연역, 지역자활센터 주요 자활사업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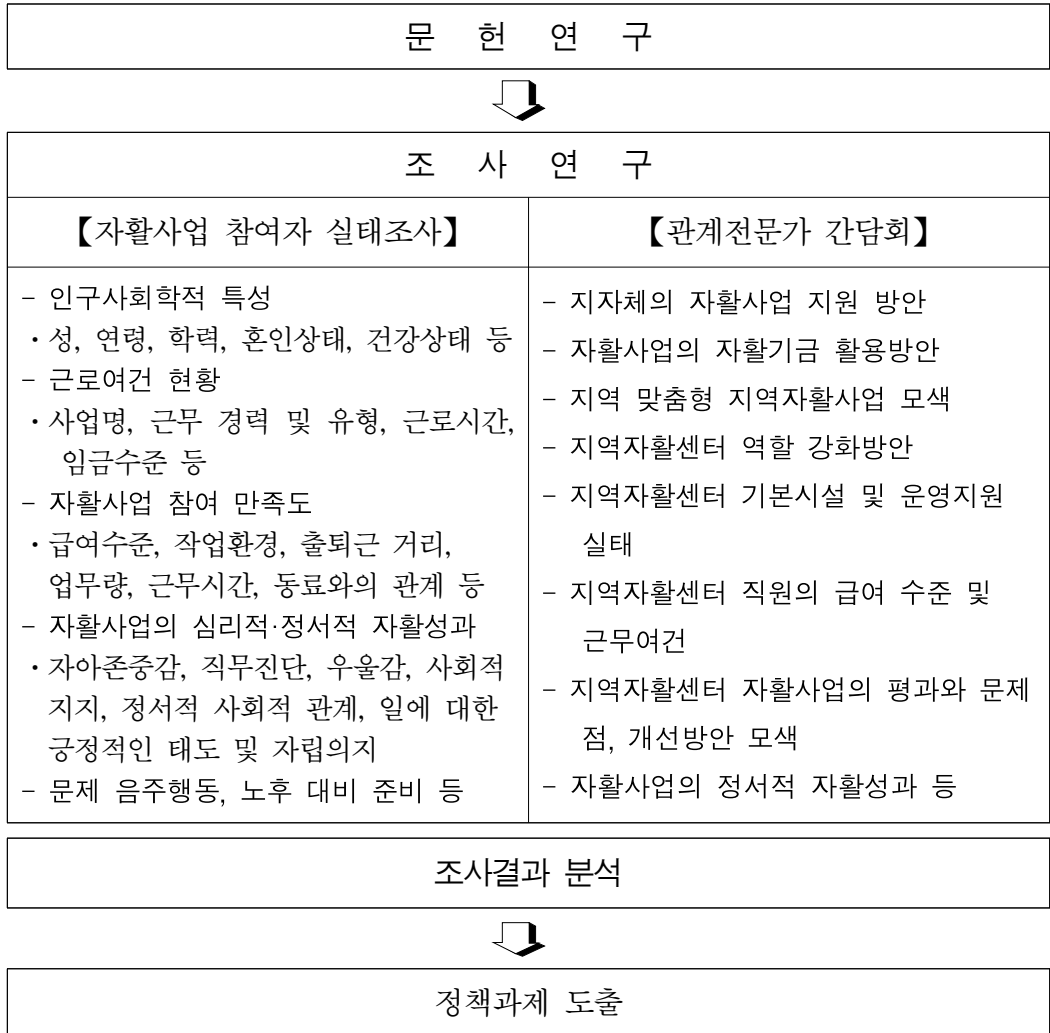
제3장은 대전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과 그동안의 성과와 평가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실태와 만족도, 자활사업의 성과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자아존중감, 직무능력, 우울감, 사회적 지지, 정서적·사회적 관계,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생활 의지 등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자활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정책제언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조사·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체계도

제2장 지역자활센터 관련 문헌 고찰

제1절 지역자활센터의 개념

1. 지역자활센터의 개념과 연혁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지역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자활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활사업 안내에 의하면 이들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에서 선별하여 위탁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을 대상¹⁾으로 자활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즉, 지역자활센터는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²⁾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1)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기초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중에서 선정한다.

- ①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참여를 희망하는 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②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③ 자활급여특례자는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은: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그동안 지역자활센터 지정·운영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0년까지 전국에 70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2001년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169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그 이후 2002년 30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나, 7개 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반납하였다. 2003년 지역자활센터 미지정 지역에 17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2004년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33개소를, 2010년에는 5개소를 신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2013년 현재 지역자활센터 247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설치지역은 서울 서초구 등 17개 시·군·구이다(보건복지부, 2014).

<표 2-1> 지역자활센터 지정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수	247	31	18	9	11	9	5	5	1	32	16	12	14	18	22	20	20	4

대전광역시는 1996년 동구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시작으로 2000년 대덕구지역자활센터, 2001년 서구지역자활센터, 2002년 중구지역자활센터, 2010년 유성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함으로써 2014년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5개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앙에 자활지원체계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자활센터 1개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 시도 단위에 광역자활센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4년 9월에 대전광역자
활센터를 개소하여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2. 법적인 근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생계급여의 방법)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
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4항(보장기관)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
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
치하여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2항(급여의 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 제15조(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

5) 국민기초생활보장 제1조(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

6) 국민기초생활보장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절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자 등에서 선정한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에 전에,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의 유형인 게이트웨이과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파일럿사업(시범사업),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4).

1. Gate Way(게이트웨이) 과정 지원

자활사업 참여 전에 진입과정(Gateway)을 프로그램화하여 개인별 자립경로와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Gate Way과정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1개월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진단평가, 기초교육 및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며, Gate Way과정에서 수립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취업알선, 개인 창업, 직업훈련 지원 등 적절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이다. 사업추진방법은 총사업비에서 인건비는 70% 이상, 사업비는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은 사업단 구성으로부터 2년까지 허용되며, 기간 내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야 한다. 단,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까지 가능하다. 지역자활센터는 위탁사업단 참여자의 25% 이상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3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형 자

활근로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총사업비에서 인건비는 80% 초과, 사업비는 20%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은 사업단 구성으로부터 2년까지 허용되며, 기간 내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까지 가능하다. 단, 향후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자활근로사업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의 추진기간을 기초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정식 사업단을 설치·운영하기 이전에 사업운영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 이내로 임시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시범사업단을 정식 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시범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전체 참여자의 15% 이내에서 운영하며 인건비 70%, 사업비 30%로 집행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자 급여단가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급여단가를 적용한다.

5.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하였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보장기관과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 창업 지원,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상품의 우선구매, 자활기업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활사업의 성과개념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나타난 물리적·과정적인 결과물로 정의된다. 자활사업 성과의 논의는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견해로 다양하다. 즉, 자활이 공적 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경제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적 부조를 통해 기초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냐가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적 성과는 자활사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정책 목표에서 나타나는데, 참여자들이 취업 및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에서 탈피하는 것을 자활사업의 목표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경제적 성과측면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의 정책적 목표로서 자활사업의 결과적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경제적 측면을 ‘결과적 성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의 결과적 성과관련 연구들은 ‘취업’, ‘창업’, ‘수급권 탈피’, ‘월평균 소득’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김교성·강철희(2003)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취업 및 창업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김태근(2004) 역시 취업, 창업, 수급권 탈피를 결과적 자활성으로 측정하였다. 권승(2005)은 비취업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연구에서 조건부수급자들의 복지수급권 탈피로 측정하고 있으며, 심은희(2002)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으로 결과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적 자활성과 측정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자활사업 참여과정에 있는 대상자들은 결과적 성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결과적 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자 하는 접근들이 제시되었다. 김연정(2006)은 자활공동체 진입여부로 자활성가를 파악하였는데 이는 자활공동체 사업 수익금에 의해 소득이 창출되고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정선(2004)은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자활소득 만족도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안중순(2001)과 김영미(2002)는 자활소득정도, 자활소득변화를 통해 결과적 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결과적 측면은 자활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과분석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과정중심적인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변화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강하다(이상록, 2003; 정원오·김진구, 2005; 한상진·김용식, 2007; 박정호, 2010).

특히 빈곤여성의 자활사업 참여의 성과는 과정적 자활성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이상록·진재문, 2003; 이형하조원탁, 2004), 이는 수급탈피로서의 자활성공률이 2004년-2006년 5.6%, 2007년 6.3%, 2008년 6.7%(보건복지부, 2012a)로 매우 낮아서 자활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의 변화에 기반 한 과정적 자활성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정적 자활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수현(2000)은 자활을 ‘과정으로서의 의미’로 개념화하고, 자활 과정을 재할-자활-자립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있다. 공공부조의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재할단계, 근로참여를 통해 생계유지의 경험을 축적하는 자활단계,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하는 자립단계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활은 과정으로서 단계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의 연구에서는 과정적 자활을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자활의욕’으로 정의하였고, 이상록·진재문(2003)은 자활사업의 최종목표인 탈빈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소인 ‘자립생활태도, 자립관련 요소의 형성’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형하조원탁(2004)은 자활효과성을 경제적 자활,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유형화 하고, 이 가운데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을 과정적 성과로 정의하였으며 ‘생활태도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과정적 성과로 개념화하였다.

과정적 성과는 자립태도 및 생활태도변화(정원오·김진구, 2005; 이정선, 2004; 엄태

영·주은수, 2011), 자활의지(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근로의욕(김영미, 2002)등 다양한 변수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는 자활사업동안 참여자의 태도변화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자활의 과정적 성과는 개별 연구마다 측정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자활사업 참여 이후 변화된 자립생활태도와 생활태도변화 양상을 지표로 활용해 분석하고 있다.

권신영(2011)의 연구는 자활성과를 결과적 자활성과와 과정적 자활성과로 구성하였다. 결과적 자활성과는 선행연구들(안중순, 2001; 심은희, 2002; 김태근; 이정선, 2004; 김은선, 2005; 권승, 2005)이 ‘수급권 탈피’ ‘취업’ ‘창업’ ‘월평균 소득’ ‘소득변화’ ‘자활공동체 진입여부’ ‘소득만족도’ 등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권신영(2011)의 연구 대상은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 여성가구주로서 ‘취업 및 창업’, ‘수급권 탈피’는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권신영(2011)의 연구는 결과적 자활성과는 측정 가능한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자활소득정도’와 ‘소득만족도’, ‘사업단 상향이동 정도’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과정적 자활성과는 선행연구(정원오·김진구, 2005; 이정선, 2004; 임태영·주은수, 2011)에서 과정적 자활성과 측정으로 적용되어온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자립태도 및 생활태도변화로 파악하였다. 또한 자활성과는 결과적 성과와 과정적 성과를 포함하였으며 결과적 자활성과는 ‘자활소득’ ‘소득만족도’ ‘사업단 향상이동정도’로 구성하였으며 과정적 자활성과는 자립생활태도변화와 생활태도 변화로 구성하였다.

<표 2-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과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자활성과지표	자활성과 측면
안중순(2001)	서울성동구 여성가구주 120명	-취업여부 -월평균 근로소득의 정도	경제적 자활
임동진(2001)	노동부 자활사업 대상자 257명	취업, 창업	경제적 자활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	자활참여 여성조건부 수급자	자활의지	과정적 자활

<표 2-2>에서 계속

연구자	연구대상	자활성과지표	자활성과 측면
심은희(2002)	전주시 빈곤모자가가정 245명	취업여부 노동시간 근로소득액	경제적 자활
김교성·강철희(2003)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917명	취업, 창업	경제적 자활
이상록(2003)	경남·전북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631명	보람·적응·적극성· 안정감·긍정적 태도 자존감·자립의지·자 신감	정서적 자활
김태근(2004)	자활사업 종료자 1005명	자활진입(취업, 창업, 수급권탈피) 자활진입소요기간	경제적 자활
이정선(2004)	대전지역 자활사업여성참여자 130명	자활소득만족도 자립생활태도 의식변화	경제적 자활 과정적 자활
이영하·조원탁(2004)	광주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391명	소득 변화 기술·능력 습득	경제적 자활
정원호·김진구(2005)	자활사업 참여자	생활태도변화 자립생활태도	과정적 자활
김은선(2005)	서울경기지역 여성가구주 대상 103명	경제적 자활 : 자활사업참여여부, 직업상당,구직등록 노력 정서적 자활 : 자립의지	경제적 자활 과정적 자활
권승(2005)	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자	복지수급권 탈피	경제적 자활
손능수(2005)	대구지역 8개 지역자활센터	소득 향상 직업능력 향상	경제적 자활
오영훈(2005)	자활직업훈련 참가자 600명	자격취득 여부 취업 여부 소득	경제적 자활
정원오·김진구(2005)	경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1,186명	보람·적응·적극성· 안정감·긍정적 태도 자존감·자립의지·자 신감	정서적 자활

〈표 2-2〉에서 계속

연구자	연구대상	자활성과지표	자활성과 측면
김연정(2006)	경기지역 자활사업참여자 329명	자활공동체 진입여부 자립생활태도	경제적 자활 과정적 자활
백학영 · 고미선(2007)	서울지역 5개 지역자활센터의 여성참여자 6명	질적연구 참여자가 과거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한성욱 · 박능후(2007)	전국 자활사업 참여자 750가구	심리적 안정 자존감 향상 인식 · 태도 변화 주관적 만족도	정서적 자활
김인숙(2008)	서울 · 부산 · 인천 · 전 북지역 성매매자활 현장실천가 21명	질적연구 경제적 자립, 과정 중시하는 자활, 자주적자활	
안서연(2008)	자활직업훈련 참가자 509명	임금 효과	경제적 자활
이영철 · 김소정(2009)	광주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602명	심리적 안정, 자존감 향상, 인식 · 태도 변화 주관적 만족도	정서적 자활
박일현(2010)	경남지역 자활사업참여자 220명	생활태도 자립생활태도	과정적 자활
박정호(2010)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 중 2007년 자활사업 참여한 105명	소득 향상 직업능력 향상	경제적 자활
임진섭 외(2010)	서울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340명	가족 · 친척관계 대인관계 형성	사회적 자활
박창균 · 이철인(2011)	전국 국기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183명	근로유인 효과	경제적 자활
엄태영 · 주은수(2011)	서울, 경인지역 자활사업참여자 331명	자립생활태도 생활태도변화	과정적 자활
보건복지부 통계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 · 창업 등 + 자활특례자(상향이동)	경제적 자활
보건복지부(2012)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율, 취업률 위업유지율	경제적 자활

* 자료출처 : 권신영(2011)의 연구와 이영범 · 남승연(2013)의 연구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하였음.

제3장 대전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제1절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1.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대전광역시 2013년 12월 말 현재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 주민은 2,490명이다. 그 중에서 5개 구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누계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130명,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446명, 게이트웨이 164명, 자활기업 424명 등 1,164명이다.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한 자활사업 참여자가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전체 참여자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2013. 12. 31)

(단위 : 명)

대전시	대상자 구분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전체													
		계	복지부 사업											고용 노동부 취성 공패 키지	
			소계	자활근로							게이트웨이	자활기업	창업지원		희망리본
				소계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소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계	2,490	2,106	1,223	991	130	446	415	232	164	424	-	295	384	
	조건부 수급자	1,360	997	618	449	49	222	178	169	77	129	-	173	363	
합계	일반 수급자	347	328	166	123	18	48	57	43	46	27	-	89	19	
	자활급여 특례자	104	102	75	55	7	19	29	20	3	17	-	7	2	
	차상위 자	679	679	364	364	56	157	151	-	38	251	-	26	-	

주)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내부자료(2013), 음영 처리한 부분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임.

2.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 성공률

대전광역시 2013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공율을 살펴보면, 참여인원 14,30명 중에서 223명이 자활에 성공하여 32.8%의 자활성공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 취·창업자(수급자 유지)가 17.4%이며, 기초생활보장 탈피가 15.3%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시장진입형의 자활성공율이 48.6%로 가장 높고, 사회서비스형이 39.4%, 게이트웨이가 34.9%, 자활기업이 8.1%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2>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2013. 12. 31)

(단위 : 명. %)

구 형 별	참여 인원	자활성공 현황											자활 성공률 (%)
		합 계	취·창업실적(수급자 유지)				기초생활보장 탈피					자 활 성 공 률 (%)	
			소 계	취 업	창 업	취·창 업율 (%)	소 계	취 업	창 업	기 타 사 유	자 활 특 례		
시장 진입 형	1430	36	20	18	2	27.0	16	2	0	1	13	21.6	48.6
사회 서비 스형	446	109	61	59	2	22.1	48	15	1	8	24	17.4	39.4
게이 트웨 이	164	44	26	26	0	20.6	18	7	0	7	4	14.3	34.9
자활 기업	424	34	0	0	0	0	14	2	0	4	8	8.1	8.1
계/ 평균	1,164	223	107	103	4	17.4	96	26	1	20	41	15.3	32.8

주)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내부자료(2013)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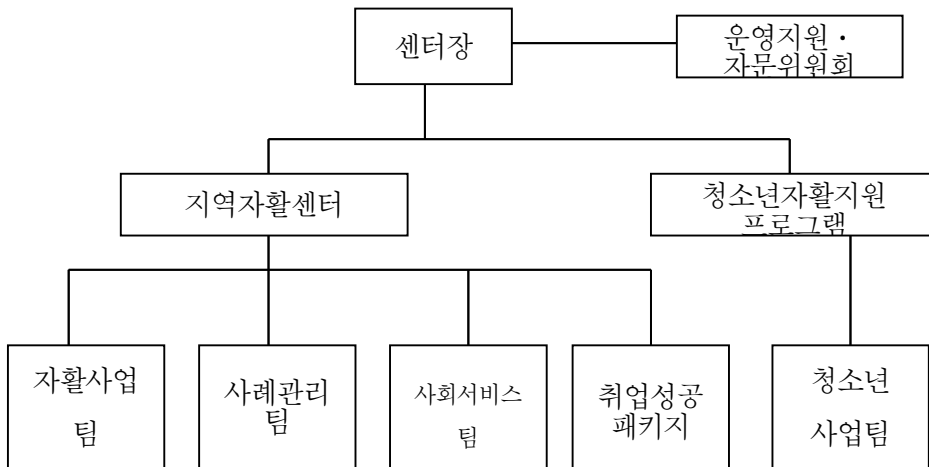
제2절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대전광역시 5개 지역자활센터에서 45개의 자활사업단, 33개의 자활기업 등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이를 각 지역자활센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구지역자활센터

1) 기관 현황

- 지정 일 : 1996. 06
- 운영법인 : 종교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운영비 : 334,108천원 (국비233,875 시비100,233)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31, 201호
- 센터장 : 고철영
- 인 력 : 총 14명 / 센터직원6, 바우처사업1, 희망키움통장사업1, 사례관리시범사업1, 게이트웨이전담관리자1, 청소년자활지원2, 취업성공패키지1, 외부기금사업1



[그림 3-1] 동구지역자활센터 조직표

2) 동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1) 동구지역자활센터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동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급자 183명과 차상위자 78명 등 261명의 저소득 주민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유료간병사업단에 수급자 2명, 차상위자 8명 등 10명의 저소득 주민이 참여했으며, 정부양곡배송사업에는 수급자 5명이 참여하였다.

〈표 3-3〉 동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참여인원			사 업 내 용	집행액
		계	수급자	차상위		
합 계		261	183	78		901,339
시장 진입형	애린인력파견사업	10	2	8	1:1 간병서비스와 다인병실 및 병동계약에 의한 간병을 수행(유료)	109,324
	정부양곡배송사업	5	5	0	정부양곡 등의 물품을 정해진 기간내 배송	78,833
사 회 서 비 스 형	환자도우미지원사업	17	15	2	병원, 요양원 등의 무료 간병인 파견	125,409
	행복담은 반찬사업	11	9	2	일반찬 제조 및 판매를 통한 개인, 기관, 단체 도시락, 반찬 판매	101,672
	특수교육실무원지원사업	21	16	5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실무원을 파견	105,471
	IT행복나눔사업	7	6	1	중고PC를 기증받거나 입찰받은 후이를 정보소외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및 정비서비스	95,116
	쪽방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17	12	5	주거환경 취약가구 및 쪽방마을에서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집수리지원	50,788
	늘품손길사업	2	1	1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등에 파견하여 향후 근로능력을 검증받아 직접적인 취업연계	3,343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과정	170	117	53	초기 의뢰된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심층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자활사업 안정적 참여 유도
인건비지원	게이트웨이전담	1	-	1(일반)	게이트웨이과정 전담 사회복지사	166,947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실무원을 파견하는

특수교육실무원지원사업에 수급자 16명, 차상위 5명 등 21명이 참여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그다음으로 병원, 요양원 등의 무료간병인파견사업에 수급자 15명과 차상위자 2명 등 17명, 주거환경취약가구 및 쪽방마을에 사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집수리지원을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수급자 12명과 차상위자 5명 등 17명이 참여하였다. 반찬판매사업에 11명, IT행복나눔사업에 7명, 늘품손길사업에 2명 등의 순서로 저소득 주민이 참여하였다. 게이트웨이과정에 수급자 117명, 차상위자 53명 등 170명이 참여하였다.

(2) 동구지역자활센터 2013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

동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 사회서비스돌봄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 25명이 참여하여 가장 많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0명,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12명 등 총 57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표 3-4> 동구지역자활센터 2013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실적

연 번	사 업 명	참여인원	내 용
	계	57	
1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0	취약계층 방문 도우미 파견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5	65세 이상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3	재가장기요양서비스	12	65세 이상 2급, 3급 재가 노인 돌봄 사업

(3) 동구지역자활센터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동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인원이 121명인데 2014년 8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07명으로 연말까지 계획 인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은 1,424,878,000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가 1,151,540,000원이며, 사업비가 273,338,000원이다.

<표 3-5> 동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명	계획인원	참여인원 (2014.8)	위탁사업비			비고
				계	인건비	사업비	
	계	121	107	1,424,878	1,151,540	273,338	-
시장 진입형	요양보호사파견	5	5	75,000	60,375	14,625	2014.01.02
	행복담은도시락	12	11	197,000	141,356	55,644	2014.01.02
사회 서비스 형	IT행복나눔	10	8	148,295	124,617	23,678	2012.05.01
	특수교육실무원 지원	14	15	164,000	148,471	15,529	2013.01.02
	환자도우미파견	17	17	185,000	169,976	15,024	2013.01.02
	늘품손길	5	3	62,705	51,857	10,848	2014.01.02
	수나래	12	12	153,000	124,922	28,078	2014.01.02
	시범사업	20	5	135,000	107,250	27,750	2014.07.02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과정	25	30	280,000	197,838	82,162	2014.01.02
인건비지원	게이트웨이과정 전담인건비	1	1	24,878	24,878	-	-

(4) 동구지역자활센터 2014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 실적

동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은 2014년 8월 현재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3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60명,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20명 등 총 93명이 참여하였다. 앞의 <표 3-4>의 2013년도 전체 사회서비스돌봄사업 추진실적이 57명인 것을 감안하면, 2014년은 2013년 대비 두 배 이상 주민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6> 동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연 번	사 업 명	참여인원 (2014.8)	내 용
	계	93	
1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3	취약계층 방문 도우미 파견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0	65세 이상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3	재가장기요양서비스	20	65세 이상 2급, 3급 재가 노인 돌봄 사업

(5) 동구지역자활센터 2014년도 자활기업 운영 현황

동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 8월 현재 자활기업은 5개소로 수급자 19명, 차상위자 42명 등 61명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아동통합교육실무원사업인 자활기업 반딧불에 41명, 유료간병사업인 돌보미와 애린에 각각 8명, 집수리사업 파랑새에 1명, 정부양곡배송사업인 대전동구나르미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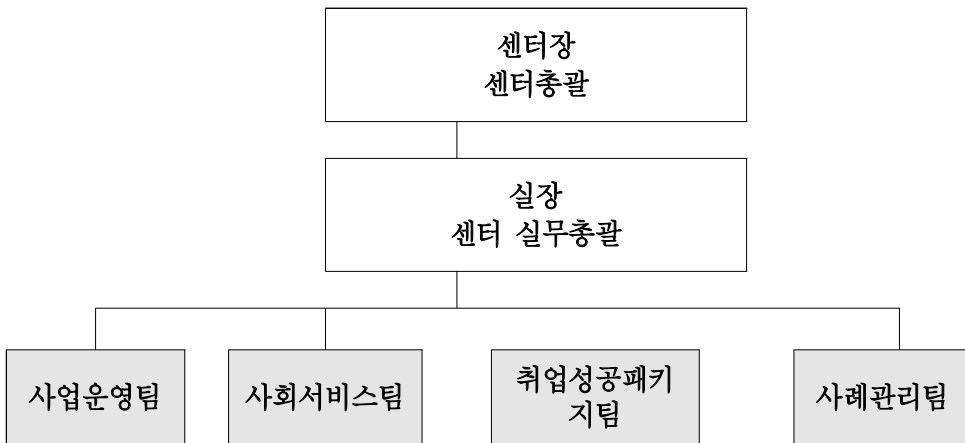
<표 3-7> 동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자활기업 운영 현황

사 업 명	상 호 명	참여인원 (2014.8)			사업내용	창업일
		계	수급자	차상위		
합 계	5개	61	19	42		
장애아동통합교육 실무원사업	반딧불	41	16	25	특수교육실무원 고용유지 사업	'07.11월
유료간병사업	돌보미	8	-	8	유료간병 파견 사업	'08.03월
유료간병사업	애린	8	1	7	유료간병 파견 사업	'11.05월
집수리사업	파랑새	1	-	1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12.02월
희망나르미 배송사업	대전동구 나르미	3	2	1	정부양곡배송 사업	'13.10월

2. 중구지역자활센터

1) 기관현황

- 지정일 : 2002.12.31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 운영비 : 293,817천원 (국비 205,672 / 시비 88,145)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75번길 16
- 센터장 : 김인희
- 인력 : 총 15명 / 센터직원(6), 바우처사업(2), 희망키움통장사업(1), 사례관리사업(1), 게이트웨이전담관리자(1), 방문요양사업(1), 취업성공패키지(3).



[그림 3-2] 중구지역자활센터 조직표

2) 중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1) 중구지역자활센터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수급자 87명과 차상위자 40명 등 총 127명의 저소득 주민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장진입형은 유료간병사업에 16명, 나누미사업단에 6명, 착한가계사업단에 4명 등 26명이 참여

하였다. 사회서비스형은 특수교육실무원에 13명, 온새미로환경사업단에 7명, 마루그린사업단에 7명, 복지간병사업단에 20명, 주거환경복지사업단에 7명, 자전거사업단에 4명, 파일럿(시범)사업에 9명 등 67명이 참여하였으며, 게이트웨이과정에 33명이 참여하였다.

<표 3-8>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참여인원			사 업 내 용	집행액
		계	수급자	차상위		
합 계		127	87	40		1,160,000
시 장 진입형	유료간병사업	16	11	5	개인 및 노인전문요양병원 유료간병	186,000
	나누미사업단	6	5	1	양곡택배, 영양플러스 택배지원	93,000
	착한가게사업단	4	3	1	천연비누제작 및 유기농제품 판매, 커피숍운영	57,000
사 회 서 비 스 형	특수교육실무원	13	9	4	특수학급에 특수교육실무원 파견	133,000
	온새미로친환경사업단	7	4	3	천연제품 및 핸드메이드제품 생산 및 판매	77,000
	마루그린사업단	7	5	2	무료 및 유료 방역사업, 청소	71,000
	복지간병사업단	20	8	12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유료간병서비스	185,000
	주거환경복지사업단	7	5	2	중구지역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66,000
	365자전거사업단	4	2	2	폐자전거 수거, 수리, 판매, 대여소 관리	55,000
	파일럿(시범)사업	9	7	2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검증 임시사업	38,000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과정	33	28	5	초기 의뢰된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심층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자활사업 안정적 참여 유도	177,808
인건비 지 원	게이트웨이전담	1	-	1(일반)	게이트웨이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21,192

(2) 중구지역자활센터 2013년도 사회서비스돌봄사업 추진실적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4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43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31명,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15명이 참여하였다.

<표 3-9>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

연 번	사 업 명	참여인원	내 용
	계	103	
1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4	취약계층 방문 도우미 파견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43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1	65세 이상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4	재가장기요양서비스	15	65세 이상 2급, 3급 재가 노인 돌봄 사업

(3) 중구지역자활센터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중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인원이 150명인데, 2014년 8월 현재 116명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진입형에서 2012년 1월부터 시작한 유료간병인사업단은 2014년에는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나누미사업단에 4명, 착한가게사업단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에는 복지간병인사업단에 22명, 특수교육실무원에 19명이 참여하여 목표보다 초과하여 참여하였고, 기타 사업단도 연말까지 계획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이트웨이과정도 49명 계획에 2014년 8월 현재 41명이 참여하였다. 중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1,223,800,000원으로 인건비가 1,034,445,000원이며, 사업비가 189,355,000원이다.

<표 3-10>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명	계획인원	참여인원 (2014.8)	위탁사업비			비고
				계	인건비	사업비	
	계	150	116	1,223,800	1,034,445	189,355	
시장 진입형	유료간병사업	16	-	186,000	172,386	13,614	2012.01.02
	나누미사업단	6	4	93,000	63,671	29,329	2012.01.02
	착한가게사업단	4	4	57,000	34,507	22,493	2010.01.02
사회 서비스 형	특수교육실무원	13	19	133,000	119,724	13,276	2010.01.02
	온새미로친환경사업단	7	4	77,000	63,639	13,361	2013.01.02
	마루그린사업단	7	5	71,000	59,255	11,745	2013.01.02
	복지간병사업단	20	22	185,000	167,368	17,632	2008.01.02
	주거환경복지사업단	7	4	66,000	55,259	10,741	2013.01.02
	365자전거사업단	4	4	55,000	38,174	16,826	2010.01.02
	파일럿(시범)사업	16	8	60,000	42,456	17,544	2013.01.02
게이트 웨이	게이트웨이과정	49	41	193,200	194,206	22,794	2010.01.02
인건비	게이트웨이전담	1	1	23,800	23,800	-	

(3) 중구지역자활센터 2014년도 사회서비스돌봄사업 추진실적

중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사회서비스돌봄사업 추진실적은 2014년 8월 현재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3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37명, 노인돌봄종합사업에 19명,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12명 등 81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앞의 <표 3-8>의 2013년도 사회서비스돌봄사업 추진실적 103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1>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

연 번	사업명	참여인원 (2014.8)	내용
	계	81	
1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3	취약계층 방문 도우미 파견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37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9	65세 이상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4	재가장기요양서비스	12	65세 이상 2급, 3급 재가 노인 돌봄 사업

(4) 중구지역자활센터 2014년도 자활기업 운영 현황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2014년 8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자활기업은 9개 기업으로 참여인원은 수급자가 19명, 차상위자가 42명 등 61명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사업인 (주)오렌지크린에 13명으로 가장 많고, 장애아동통합교육실무원사업 맘사랑에 12명, 간병인사업 사랑나눔간병에 5명, 유료간병사업와 마루인테리어에 각각 4명 등의 순서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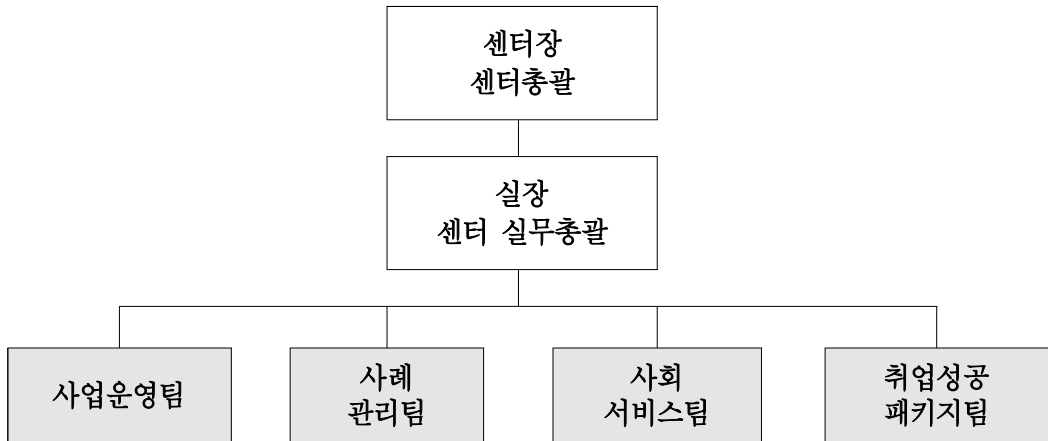
<표 3-12> 중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자활기업 운영 현황

사업명	상호명	참여인원 (2014.8)			사업내용	창업일
		계	수급자	차상위		
합계	9개	44	20	15 (일반 9명)		
마루인테리어	마루인테리어	4	1	1	집수리, 인테리어사업	'06.05월
외식사업	전주식당	1	-	-	외식(백반전문)사업	'06.05월
청소사업	오렌지크린	1	-	1	특수청소, 주택관리사업	'08.08월
청소사업	(주)오렌지크린	13	12	1	학교화장실청소, 특수용역사업	'10.09월
문화사업	아낌없이주는나무	2	-	2	문화이벤트 사업	'11.09월
장애아동통합	맘사랑	12	5	5	특수교육보조원파견	'07.05월
유료간병인사업	한마루간병	4	-	1	24시간 간병용역	'07.05월
간병인사업	사랑나눔간병	5	1	3	무의탁 환자 간병	'12.05월
간병인사업	조은사람들	2	1	1	24시간 간병용역	'14.08월

3. 서구지역자활센터

1) 기관현황

- 지정일 : 2001. 07. 01
- 운영법인 :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 운영비 : 293,817천원 (국비205,667, 시비88,143)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76(주원빌딩 5층, 용문동)
- 센터장 : 김 선 경
- 인 력 : 총 14명 / 센터직원6, 바우처사업3, 희망키움통장사업1, 사례관리시범사업1, 게이트웨이전담관리자1, 방문요양사업1, 취업성공패키지1.



[그림 3-3] 서구지역자활센터 조직표

2) 서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1) 서구지역자활센터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서구지역자활센터 2013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수급자93명과 차상위 24명으로 총 117명의 저소득주민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에는 행복자전거서비스에 13명, 행복쌀배송사업에 5명, 유료간병사업에 5명 등 20명이 참여

하였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에는 특수교육실무원사업에 15명, 행복다육나라사업에 14명, 복지간병사업에 13명, 놀이친구친친사업에 9명, 엔젤플라워사업단에 7명, 파일럿 사업에 1명 등 69명이 참여하였다. 게이트웨이과정에는 26명이 참여하였다.

<표 3-13> 서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참여인원			사 업 내 용	집행액
		계	수급자	차상위		
합 계		117	93	24		1,209,797
시 장 진입형	행복쌀배송사업	5	4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정부양곡배송	62,178
	유료간병사업	2	1	1	병원 유료간병서비스 지원	22,056
	행복자전거서비스	13	10	3	폐자전거 수거, 수리 및 재생자전거 생산, 판매	167,914
사 회 서 비 스 형	특수교육실무원	15	14	1	초,중,고 장애아동지원 특수교육실무원 파견, 취업	124,896
	복지간병사업	13	11	2	의료보호 1, 2종 환자 병원간병서비스 제공	153,689
	엔젤플라워사업	7	6	1	가정 및 사무실 등 건물내 실내조경 설치 및 화훼류 판매	94,932
	놀이친구친친사업	9	7	2	가정 및 시설에 장애아동 놀이활동지원서비스 제공	116,195
	도시광산사업	10	9	4	휴대폰, 폐가전제품 등에서 금,은, 동, 플라스틱 등의 희귀금속 및 플라스틱 원료 추출, 판매	133,522
	행복다육나라	14	10	4	다육식물, 선인장 재배 및 판매	185,548
	파일럿(시범)사업	1	1	-	정식사업단 설치,운영 이전에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검증하기 위한 임시사업	2,240
게이트 웨 이	게이트웨이과정	26	19	7	초기 의뢰된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심층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자활사업 안정적 참여 유도	100,796
인건비 지 원	게이트웨이전담	1	-	1(일반)	게이트웨이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29,917
	자활도우미	1	-	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도우미	15,914

(2) 서구지역자활센터 2013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

서구지역자활센터 2013년 사회서비스돌봄사업 추진실적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9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57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1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14명, 재가장기요양서비스 29명 등 170명이 참여하였다.

<표 3-14> 서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 실적

연 번	사 업 명	참여인원	내 용
	계	170	
1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9	취약계층 방문 도우미 파견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57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1	65세 이상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4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14	저소득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5	재가장기요양서비스	29	65세 이상 2급, 3급 재가 노인 돌봄 사업

(3) 서구지역자활센터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표 3-15> 서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 업 명	계획 인원	참여인원 (2014.8)	위탁사업비			비 고
				계	인건비	사업비	
	계	164	239	1,635,000	1,322,272	312,728	
시장 진입형	유료간병사업	4	5	46,903	43,384	3,519	2011.02.21
	행복자전거서비스사업	11	13	201,623	129,521	72,102	2012.07.01
	엔젤플라워사업	10	8	85,574	60,897	24,677	2014.07.01
사 회 서 비 스 형	특수교육실무원사업	15	23	156,801	142,053	14,748	2005.02.01
	복지간병사업	20	26	185,312	168,762	16,550	2002.02.01
	엔젤플라워사업	8	-	62,170	40,308	21,862	2009.02.09
	놀이친구'친친'사업	5	9	82,229	60,808	21,421	2009.02.09
	행복다육나라사업	11	13	153,858	108,722	44,863	2011.02.21
	행복전동휠체어사업	16	15	167,058	127,985	39,073	2014.03.01
	클리닝사업	26	25	159,468	143,528	15,940	2014.07.01
	파일럿(시범)사업	15	33	100,580	88,181	12,399	2014.11.01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과정	20	67	187,789	162,215	25,574
인건비	게이트웨이전담인건비	1	1	28,834	28,834	-	
	자활도우미인건비	1	1	17,074	17,074	-	

서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이 164명인데, 2014년 8월 현재 239명의 저소득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 비교하여 많은 인원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행복자전거서비스사업이 13명, 엔젤플라워사업 8명, 유료간병사업이 5명으로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은 파일럿사업이 33명, 복지간병인사업 26명, 클리닝사업 25명, 특수교육실무원사업 23명 등 144명이 참여하고 있다. 게이트웨이과정에도 67명이 참여하고 있다.

(4) 서구지역자활센터 2014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

서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8월 현재, 사회서비스돌봄사업 추진 현황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29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65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5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12명,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34명으로 총 175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3-16> 서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 현황

연 번	사 업 명	참여인원 (2014.8)	내 용
	계	175	
1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9	취약계층 방문 도우미 파견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65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5	65세 이상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4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12	저소득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5	재가장기요양서비스	34	65세 이상 2급, 3급 재가 노인 돌봄 사업

(5) 서구지역자활센터 2014년도 자활기업 운영 현황

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2014년도 8월 현재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자활기업은 10개 기업으로 참여인원은 수급자 67명과 차상위자 51명으로 총 1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인원수가 많은 기업은 장애아동통합교육실무원사업을 하는 자활기업 민들레교실이 66명으로 가장 많고, 노인돌보미사업을 하는 자활기업 한울타리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하는 자활기업 함께걸음이 각각 15명, 소형기전재활용사업 자활기업 플러스산업이 6명 등의 순서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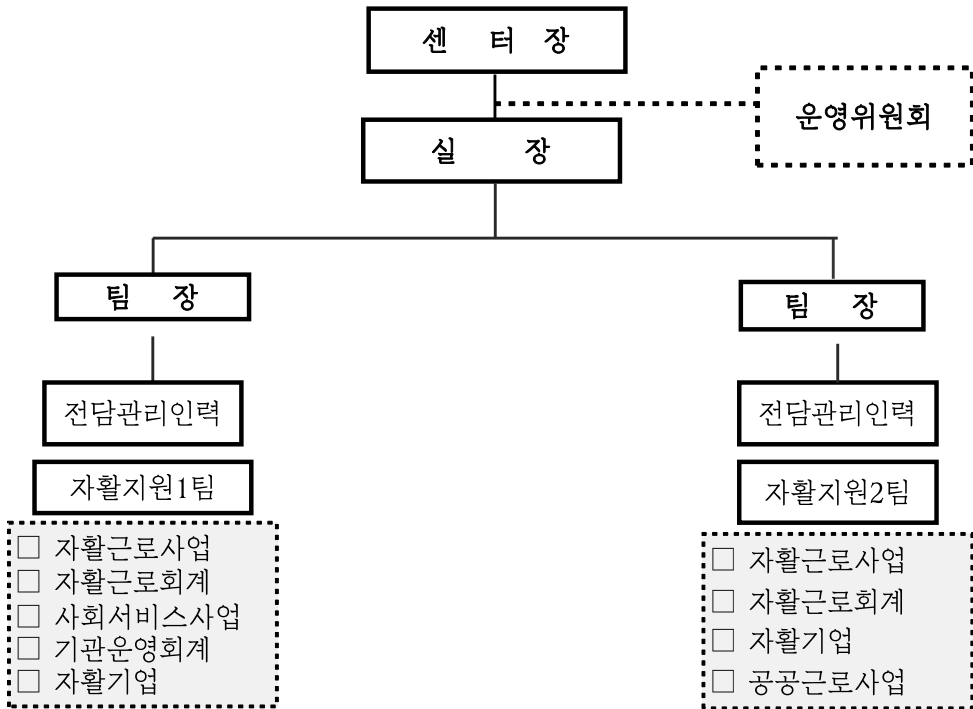
<표 3-17> 서구지역자활센터의 2014년도 자활기업 운영 현황

사 업 명	상 호 명	참여인원 (2014.8)			사업내용	창업일
		계	수급자	차상위		
합계	10개	118	67	51		
집수리사업	행복이가득한 집	3	-	3	저소득가구의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04.1월
타올·판촉물사업	다솜기획	1	-	1	홍보용 물품 유통 및 제작	'04.9월
의류재활용사업	행복한나눔가게	2	2	-	헌옷 재활용 사업, 매장 운영	'06.1월
유료노인간병사업	약손간병	2	1	1	유료 요양보호사(간병사) 파견사업	'06.1월
장애아동통합교육실무원사업	민들레교실	66	47	19	취업 특수교육실무원 고용유지 사업	'06.5월
산모산생(아)도우미사업	아미지	3	2	1	산모도우미 파견사업	'08.5월
노인돌보미사업	한울타리	15	6	9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08.5월
장애인활동보조원사업	함께걸음	15	6	9	장애인 활동보조원 파견 사업	'08.5월
소형기전재활용사업	플러스산업	6	-	6	폐소형기전 재활용품 선별 등	'10.1월
희망나리배송사업	행복물류산업협동조합	5	3	2	정부양곡나리미 배송사업	'13.07월

4. 유성지역자활센터

1) 기관현황

- 지정일 : 2010. 12. 27
- 운영법인 : (재)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유지재단
- 운영비 : 178,790천원(국비125,153, 시비53,637)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 5층(장대동, 성우빌딩)
- 센터장 : 우하영
- 인력 : 총 6명 / 센터직원 4명, 전담관리자 2명



[그림 3-4] 유성지역자활센터 조직표

2) 유성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1)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유성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급자 79명과 차상위자 21명 등 100명의 저소득 주민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2개 외식사업단에 수급자 17명, 차상위자 5명 등 22명이 참여하였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은 시범사업단에 수급자 18명과 차상위자 6명 등 24명으로 가장 많고, 환경개선사업단에 수급자 16명과 차상위자 6명 등 22명, 프리저브드플라워사업단에 13명, 힐링목공사업단에 12명, 특수교육실무원파견사업단에 7명 등의 순서로 참여하였다.

<표 3-18> 유성지역자활센터의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참여인원			사 업 내 용	집행액
		계	수급자	차상위		
합 계		100	79	21		769,170
시 장 진 입 형	외식사업단(민들레집들)	8	5	3	한식 식당 운영	130,928
	외식사업단II(민들레우돈)	14	12	2	우동돈가스 전문점 운영	162,633
사 회 서 비 스 형	특수교육실무원 파견사업단	7	7	-	장애아동 학습 및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실무원 파견	52,726
	프리저브드플라워사업단	13	11	2	시들지 않는 생화를 직접 제작 판매	70,811
	환경개선사업단	22	16	6	학교 화장실 청소 파견, 친환경 수세미 제작	153,671
	힐링목공사업단	12	10	2	민들레목공방 운영, 작품 제작 판매	71,272
	시범(파일럿)사업단	24	18	6	2개의 사업단을 6개월 임시적으로 운영 후 정식사업단 전환	127,129

(4) 유성지역자활센터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유성지역자활센터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이 164명인데, 2014년 8월 현재 67

명이 참여하고 있다. 게이트웨이과정에 참여가 다소 미흡한 것을 제외하면 2013년 수준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에 5명,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에 33명, 근로유지형사업단에 20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표 3-19>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명	계획인원	참여인원 (2014.8)	위탁사업비			비고
				계	인건비	사업비	
	계	115	67	1,075,555	893,305	182,250	
시장진입형	외식사업단	7	5	86,438	61,743	24,695	2012.08.01
사회서비스형	환경개선사업단	11	3	78,840	64,160	14,680	2012.01.09
	프리저브드플리워사업단	10	5	92,201	73,761	18,440	2013.07.01
	힐링목공사업단	9	6	121,780	97,421	24,359	2013.07.01
	특수교육실무원파견사업단	5	9	109,590	98,640	10,950	2011.04.01
	커피큐브	5	4	26,611	21,291	5,320	2014.07.01
	시범(파일럿)	10	6	155,720	109,000	46,720	2014.01.10
인턴도우미형	복지도우미사업단	14	7	166,880	150,200	16,680	2013.01.01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사업단	22	20	175,470	166,700	8,770	2013.01.01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사업단	20	2	40,060	28,424	11,636	2014.01.01
인건비	자활기업인건비지원	2	-	21,965	21,965	-	

(5) 유성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유성지역자활센터는 대전광역시 5개 센터 중에서 가장 늦은 2010년 12월 27일에 지정되었다. 유성지역자활센터는 아직 초창기로서 2014년 8월 현재 1개 자활기업에 차상위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3-20>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사업명	상호명	참여인원(2014.8)			사업내용	창업일
		계	수급자	차상위		
합계	1개	1	-	1		
외식사업단	유성맛집민들레집들	1	-	1	한식 식당 운영	'13.10월

4. 대덕구지역자활센터

1) 기관현황

- 지정일 : 2000. 06.
- 운영법인 : 대한예수교장노회 대전노회유지재단
- 운영비 : 274,138천원 (국비191,897 시비82,241)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62, 주민복지회관 2층
- 센터장 : 고혜신
- 인력 : 총 12명 / 센터직원5, 바우처사업3, 사례관리시범사업1, 희망키움통장사업실무자1, 게이트웨이전담관리자1, 외부기금사업1



[그림 3-4] 대덕구지역자활센터 조직표

2) 대덕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1) 대덕구지역자활센터 2013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대덕구지역자활센터의 2013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급자 108명과 차상위자 99명 등 207명의 저소득 주민이 참여하였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특수청소사업에 41명과 나우리간병사업에 9명 등 50명이 참여하였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은 특수교육실무원사업에 21명, 토탈홈클리닝사업에 19명, 핸드하우스사업에 13명, 주거복지사업에 7명 등 64명, 게이트웨이과정은 수급자 52명과 차상위자 99명 등 92명이 참여하였다.

<표 3-21> 2013년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참여인원			사 업 내 용	집행액
		계	수급자	차상위		
합 계		207	108	99		1,000,000
시 장 진 입 형	나우리간병사업	9	2	7	보호자 없는 병동 간병 계약 산재 및 인공관절환자 전문간병	79,194
	특수청소사업	41	19	22	교육청 연계사업 깨끗한 학교만들 기 위생관리용역	392,859
사 회 서 비 스 형	토탈홈클리닝사업	19	10	9	관내 공공시설 환경 관리 입주청소, 건물관리	120,640
	주거복지사업	7	3	4	저소득가정 주거복지환경 개선 사 업 도배 장판 공사, 실내인테리어	55,900
	핸드하우스사업	13	6	7	손쉽게 할 수 있는 부업작업	65,000
	희망카페사업	4	3	1	커피 및 음료 등 판매	35,386
	특수교육실무원사업	21	13	8	장애아동 돌봄 전문인력 양성 관내 특수학급 보조원 파견	123,183
게이트 웨 이	게이트웨이과정	92	52	40	사업참여 전 개별형 사례관리 신규사업 개발 개인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101,376
인 건 비 지 원	게이트웨이전담	1	-	1(일반)	게이트웨이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26,453

(2) 대덕구지역자활센터 2013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

대덕구지역자활센터 2013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60명으로 가장 많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2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18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에 8명 등 106명이 참여하였다.

<표 3-22> 2013년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 추진실적

연 번	사 업 명	참여인원	내 용
	계	106	
1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8	취약계층 방문 도우미 파견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60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8	65세 이상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4	재가장기요양서비스	20	65세 이상 2급, 3급 재가 노인 돌봄 사업

(3) 대덕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대덕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사회서비스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은 86명인데, 2014년

<표 3-23>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 업 명	계획인원	참여인원 (2014.8)	위탁사업비			비 고
				계	인건비	사업비	
	계	86	87	1,000,000	887,481	112,519	
시 장 진입형	나우리간병사업	6	6	75,118	69,290	5,828	
	특수청소사업	20	27	256,471	230,969	25,502	
사 회 서 비 스 형	도탈홈클리닝사업	10	8	119,054	101,251	17,803	
	주거복지사업	5	6	52,706	39,280	13,426	
	핸드하우스사업	7	10	79,912	70,902	9,010	
	희망카페사업	3	3	41,427	31,288	10,139	
	특수교육실무원사업	10	7	110,258	101,289	8,969	
	깨끗한세상	7	9	86,286	76,952	9,334	
	시범사업	3	-	18,939	15,746	3,193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과정	15	10	130,354	121,039	9,315	
인건비	게이트웨이전담인건비	1	1	29,475	29,475	-	

8월 현재 추진실적이 87명으로 연말까지 계획 인원을 크게 초과하여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33명,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 43명, 게이 트웨이과정에 10명이 참여하였다.

(4) 대덕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

대덕구지역자활센터 2014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보 조지원사업에 6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20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3명 등 93 명이 참여하였다.

<표 3-24> 2014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연 번	사 업 명	참여인원 (2014.8)	내 용
	계	93	
1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3	취약계층 방문 도우미 파견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60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	65세 이상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5) 대덕구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운영 현황 2014년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추진실적

<표 3-25> 2014년 자활기업 운영 현황

사 업 명	상 호 명	참여인원 (2014.8)			사업내용	창업일
		계	수급자	차상위		
합계	8개	153	35	35 (일반83)		
섬기미간병사업	섬기미간병	3	1	-	다인간병실운영	'11.06월
크린스쿨	크린스쿨	3	-	1	건물관리용역	'10.05월
행복한밥상	행복한밥상	15	-	1	도시락, 출장뷔페	'08.07월
크린데이	크린데이	2	1	-	방역, 소독	'08.03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하얀민들레	22	4	10	노인돌봄바우처사업	'07.08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함께걸음	59	7	4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사업	'07.08월
특수학급보조교사	해뜨는교실	47	22	18	임용특수학급보조교사사업	'06.02월
자연염색사업	이론황토	2	-	-	천연염색의류, 소품제작 및 판매	'05.12월

대덕구지역자활센터에서 2014년 8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운영 및 지원하고 있는 자활기업은 8개 기업으로 수급자 35명과 일반인 83명, 차상위자 35명 등 153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활기업 함께걸음에 59명으로 가장 많고, 특수학급보조교사사업을 시행하는 자활기업 해뜨는교실에 47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행 자활기업인 하얀밀들레에 22명 등의 순서로 참여하고 있다.

제3절 광역자활센터 설립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 3년 동안 인천, 대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이후, 2008년 부산, 강원, 전북 그리고 2010년 서울, 2013년 광주, 충북, 경남 등 1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대전, 충남, 전남, 경북 등 14개 시도로 확대 설치하였다.

대전광역시는 2014년 9월 23일에 중구 중교로 30 송촌빌딩 5층에 대전광역자활센터를 소하였다. 대전광역자활센터의 기관 현황 그리고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자활센터 기관 현황

- 개 소 일 : 2014. 09. 23
- 운영법인 :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 운 영 비 : 227,500천원 (국비159,250 시비68,250) / 국비 70%, 시비 30%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30 송촌빌딩 5층
- 센 터 장 : 이 현 수
- 인 력 : 8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2, 대리 2, 팀원 2명)
- 시설규모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사무공간 약 165㎡과 교육장은 약 7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약 132㎡임



[그림 3-6] 대전광역자활센터 조직도

2. 대전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1) 자활인프라 및 광역단위 사업개발

- 대전광역시 자활기관협의체(가칭, 지역자활협의체) 조직운영
- 민·관 지역자원 연계망 구축
- 다각적인 자활사업 지원체계 구축

- 자활기업 규모화 및 광역사업 연구 개발
 - 광역사업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 2)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경영지원 체계 구축
- 전문가 Group 경영·사업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 사업 활성화를 통한 취·창업 지원
- 3) 자활생산품 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자활기업 자립기반 조성
- 자활상품 및 로컬푸드 매장을 거점으로 유통 인프라 구축
 - On-Off Line 유통망 구축으로 자활상품 홍보 및 판매망 구축
 - 생산품 개발 및 품질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및 건강한 일자리 창출
 - 자활기업의 생산품 판매촉진 및 유통 안정화 기반 마련
- 4)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자활·자립 역량강화
- 자활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역량강화 위한 인적육성 및 매뉴얼 개발
 - 자활참여자의 사회·경제적 기능향상 위한 자원체계 발굴 및 연계
 - 고용·복지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자활사업 서비스 효율·효과성 증진
- 5) 자활사업 및 정책 조사 연구를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자활사업, 참여자, 종사자에 대한 다각적 조사 연구
 -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자활사업 발전방안 방향 제시
 - 대전형 자활사업 아이템 연구 및 보급
- 6) 협동조합(협동사회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대전광역시 내 협동조합 설립·전환 지원
 - 자활기업 협동조합 전환 및 신규 설립 컨설팅 제공
 -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협동조합 교육 전문가 양성

제4절 지역자활센터 운영 평가와 시사점

1. 지역자활센터 2011년도 평가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1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전지역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김태완 외, 2012).

〈표 3-26〉 대전지역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표

5대 지표	세부 지표	평균	최대	최소	전국평균
① 참여지수	자활 참여자 수 (단위 : 명)	268.2	352	41	188.9
② 자활성과	자활성공률(단위 : %)	19.9	27.3	0	20.2
	취업유지율(단위 : %)				
	취업유지율(3개월)	57.9	100	0	43.6
	취업유지율(6개월)	52.1	82.6	0	40.8
③ 자활공동체 지원	자활공동체 수(단위 : 개)	5.2	9	0	4.7
	자활공동체 참여자 1인당 월평균급여액(단위 : %)	109.1	158.2	0	120.8
	자활공동체 생존율(단위 : %)	77.5	100.0	0	70.1
④ 사업단운영	시장진입형	693,187	1,241,214	0	682,834
	·1인당 월평균 매출액(단위 : 원)				
	사회적 일자리형(택1)				
	·1인당 월평균 매출액(단위 : 원)	-	-	-	339,645
⑤ 교육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단위 : %)	89.4	94.0	82.0	88.6
	참여자 직무교육 이수율(단위 : %)	86.1	96.3	73.6	71.5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단위 : %)	77.8	100	0	78.9
	외부자원 동원(단위 : 곳)				
	재정지원	5			229
	기타지원				15
	없음				3

대전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수는 268.2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자활성공률은 19.9%, 최대는 27.2%, 최소는 0.9%로 자활성공률 전국평균이 20.2%로 전국 평균과

비교 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취업유지율은 3개월은 57.9%, 6개월은 52.1%로 전국평균에 비해 높았다. 인천 및 광주지역과 같이 취업유지율이 높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내실 있는 자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공동체 수는 5.2개로 전국 평균 4.7개에 비해 다소 많았다. 참아져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109.1%로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른 광역시들과 같이 자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자활참여자 개인을 위한 급여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활공동체의 생존율은 77.5%로 전국평균 7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단 운영에 있어 시장진입형의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은 693천원으로 전국 평균 683천에 비해 약 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 일자리 형의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보고한 대전지역 자활센터는 없었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는 89.4%로 전국평균 88.6%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있어서는 참여자 직무교육 이수율은 86.1%로 전국 평균 71.5%에 비해 높았으며,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역시 77.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종사자에 비해 참여자의 직무교육 이수율이 높은 지역중 하나로 평가된다. 외부자원을 동원한 곳은 5곳으로 대전지역 센터 모두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전지역의 경우 자활참여자, 취업유지율, 자활공동체 생존율 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기타 다른 항목에 대한 점수들도 전국 평균에 대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급여수준은 다소 낮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2. 지역자활센터 2013년도 평가 결과³⁾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 17일에 '13년도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25개 지역자활센터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발표하였다.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3)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4. 6. 17일 보건복지부.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 중에서 일을 통한 탈수급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인 참여주민들의 힘으로 만든 공동 창업형태인 자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확대·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번 최우수기관으로서 도시형 지역자활센터로는 경남 김해, 대전 동구 및 중구, 서울 동작 등 13개 센터, 도농복합형에는 경남 진주, 경북 영천, 대구 달성 등 5개 센터, 농촌형에는 경남 거창, 전남 장흥, 충북 진천 등 7개 센터가 선정되었다. 더불어 ‘13년도에는’ 12년도에 비하여 도시형은 7개 센터, 도농복합형은 3개 센터, 농촌형은 5개 센터가 새롭게 최우수기관으로 편입하였다.

지역자활센터 평가는 시·군·구별로 설치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역량제고 및 자활근로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금번 평가는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형(126개), 도농복합형(55개), 농촌형(66개) 등 유형별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취업·창업, 탈수급 등 자활성공률, 자활사업단의 수익·매출 성과 등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특성화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난 1월부터 중앙자활센터에서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로부터 평가자료를 제출 받아 ‘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25개, 우수기관 50개 및 미흡기관 25개 센터를 선정하고 이중 최우수기관 25개는 발표하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격려차원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장관표창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기관(25개)은 우수기관 마크가 새겨진 현판을 수여하여 종사자들이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집중교육 등 컨설팅지원과 현지 지도·감독 강화 등 자활센터의 운영개선을 통해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평가 결과에 대한 시사점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역량제고 및 자활근로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를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형(126개), 도농복합형(55개), 농촌형(66개) 등 유형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대전광역시 5개 지역자활센터는 도농복합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평가결과 2개 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시비 47,000,000원을 지원받았으며, 2개 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시비 27,000,000원을 지원 받는 등 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성과는 경제적인 자활지표만으로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다.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창업, 수급권 탈피, 월평균 소득 증가율 등과 같은 결과적 성과뿐만 아니라 자활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태도의 변화에 기반한 과정적 자활의 성과도 중요하다. 즉, 과정적 자활성과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형성된 자활의욕, 자립생활태도,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자아존중감 증진, 우울감 감소, 사회적 관계망 형성, 변화된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 생활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도 매우 중요하다.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를 <표 3-27>에서 살펴보면, 자활성공률로서 취업, 창업률, 탈수급율, 취업유지율, 월평균 수익금 및 매출액, 월평균 급여율과 같은 경제적 자활, 즉 결과적 성과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향후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경제적 자활과 같은 결과적 성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자활과 같은 과정적 자활에 대한 성과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3-27> 2013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구분	지 표 명		점수	비고		
공통 지표 (85점)	① 자활 성과 (26)	자활 성공률	일반기업 취업·창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자활기업 취업·창업률(차상위자 포함)	15		
			탈수급률(자활특례 포함)	5		
		취업 유지율	3개월 유지율	2		
			6개월 유지율	4		
	② 사업단 수업 (22)	시장 진입 사업단	1인당 월평균 수익금	3		
			1인당 월평균 매출액	3		
		사회서비스 사업단 형사업단	고 용 행	만족도 조사	4	
			비 고 용 행	1인당 월평균 수익금	3	
			비 고 용 행	1인당 월평균 매출액	3	
		참여 자 본 향 상 지 원	전문자격증 취득비율(1년 이내)	6		
	민간자격증 취득비율(1년 이내)					
	③ 자활 기업(7)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5		
		자활기업 수급자 비율		2		
	④ 참여 자 관 리(12)	참여 자	직무교육 이수율	4		
			소양교육 이수율	4		
		참여자 사례회의 개최율		4		
	⑤ 센터 운 영 (18)	종사자 1인당 직무교육 이수율(센터장 제외)		2		
		기관 및 사업관련 홍보건수		3		
종사자 근속년수		3				
재 무 회 계 투 명 성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5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5			
특 성 화 지 표 (15점)	⑥외부 자원 후 원(3)		외부기관 후원연계 건수	3		
	⑦지 역 유 형 별 특 화 사 업 개 발 및 발 굴(6)	지자체 위탁사업(중앙정부사업 제외) 건수		3		
		민간(기업, 단체 등) 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3		
	⑧지 역 일 자 리 연 계 및 특 화 사 업(6)	자활사업 미참여자 지역일자리 성공률 해당센터 자활사업 미참여자 지역일자리 성공건수 지역별 조건부과제외(유예자)수		3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MOU, 워크숍, 행사 등)		3				

제4장 지역자활센터 조사결과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대전광역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7월 현재 대전광역시 5개 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약 880여 명 중에서 314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개 지역자활센터직원들의 협조로 자활사업 참여자 월례회의 및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참석 대상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간은 2014년 7월 4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설문조사를 함께 수행한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생 박현주의 협조와 사전교육 과정을 통해서 훈련된 조사원 5명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월례회의 및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면서 대부분이 본인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학력이 낮거나 고령인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직접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 소요시간은 조사대상자별로 개인적 차이가 있었으나 대략 20~30분 정도였다.

2. 전문가그룹 인터뷰(FGI)

대전광역시 5개 지역자활센터와 1개 광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과 실장, 대전광역시 해당 실무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그룹 인터뷰(FGI)를 하기위하여 콜로키움을 3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전문가콜로키움은 대전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2014년 4월 22일 제1차 회의 그리고 9월 1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5개 지역자활센터장과 해당부서 담당 사무관 및 주사 등이 참여하였다. 제2차 회의는 5개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실장들과 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끝으로 2014년 10월 21일 제3차 회의는 광역자활센터장 및 사무국장, 대전자활협의회 사무국장, 5개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실장이 참석하였다. 회의내용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실태 및 직원 근무여건,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3. 조사내용 및 자료 분석 방법

1) 조사내용

대전의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실태와 만족도, 자활사업의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측정도구는 아래와 같이 크게 인구학적 특성, 자활사업 참여실태와 만족도, 자활사업의 성과로서 자아존중감, 직무능력, 우울감, 사회적지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생활 의지 등을 측정하였다. 그밖에 문제 음주경험, 노후대비 준비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특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배우자 유무, 경제수준, 가구주 여부, 결혼상태, 건강상태, 질병 및 장애정도를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과 여, 연령은 만 연령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하였다.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구성원 실인원수를 기입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부터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중퇴 및 재학자도 졸업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가구주 여부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장인 경우에도 가구주로 기입하게 하였다. 가구주는 1, 가구원은 2로 코딩하였다. 배우자 유무에서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기혼과 재혼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미혼, 이혼, 별거, 사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은 리커트식 5점 척도(매우 나쁘다, 1점 ~ 매우 좋다, 5점)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활동에 있어서 몸에 질병 및 장애정도가 있어 불편한가를 묻는 질문도 리커트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좋다, 5점)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자활사업 참여 실태와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 사업단 소속, 사업단에서의 근로기간, 평균 소득, 자활급여 소득 만족도, 국민기초생활법상 지위, 자활사업 참여 전체 기간, 자활사업 참여 중에 사업단 변경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게이트웨이, 파일럿사업(시범사업),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자활사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사업단 소속은 소속된 사업단의 명칭을 기입하게 하였다. 사업단에서 근로기간은 참여 개월 수, 평균소득은 일당 평균을 기록하게 하였다. 자활급여 만족도는 리커트형 5점 척도(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활사업 참여 중에 사업단 유형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전의 사업단 유형과 변경된 사업단 유형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활사업 만족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은 신뢰도 .75로 나타났다.

(3) 자활사업의 성과

자활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자아존중감, 직무능력, 우울감, 사회적지지,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생활 의지 등을 조사하였다.

① 자아존중감

먼저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 Rosenberg, M.(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RSE)를 사용하였다. 10문항의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4점 척도(전혀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에서 부정적으로 질문한 문항인 3, 5, 8, 9, 10번은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는 거트만척도로서 .92의 거트만척도 재생산(reproducibility) 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리킨다. 리커트 평점방식으로 진행된 오승환(2001)의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6으로 나왔다. 또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본 척도의 동시타당도, known-groups 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성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② 직무능력

직무능력 척도는 최인이(1998)가 번안한 Hackman과 Oldham(1975)이 개발한 직무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직무다양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등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⁴⁾. 이 척도는 9개 문항의 리커트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으며, 설문 문항에서 직무다양성은 1, 2, 3번 문항이며, 과업중요성은 4, 5, 6번이고 자율성은 7, 8, 9번이다. 설문 문항에서 부정적으로 이루어진 3, 6, 9번은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다양성과 과업중요성,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직무다양성 0.72, 과업중요성 0.74, 자율성은 .83으로 나타났다. 타당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가 입증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직무다양성 .55, 과업중요성 .67, 자율성 .58로 나타났다.

③ 우울감

4) 첫째, 직무다양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상이한 기술을 사용할 기회로 정의된다. 둘째, 과업중요성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직무를 수행할 기회로 정의된다. 셋째, 자율성은 업무절차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행할 기회로 정의된다.

우울감척도(CES-D)는 1971년 미국정신보건연구원이 지역사회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가 어떠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판 CES-D(신승철 등, 1991; 전경규·이민규, 1992; 조맹제·이계희, 1993)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한국판 CES-D를 기초로 전병구·최상진·양병창(2001)이 통합적 척도로 개발한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증 척도는 20문항으로 최근 1주일 동안 느낀 우울감(매우 드물게 1일 이하는 0점, 가끔 1~2일은 1점, 자주 3~4일은 2점, 거의 대부분 5~7일은 3점)을 조사하였다. 문항에서 4, 8, 12, 16번 문항은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문항으로 역산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CES-D 척도는 다양한 계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고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속한 문항들을 기존의 우울증 척도들로부터 선정함으로써 그 자체로 내용 타당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Rodloff(1977)는 임상우울증 환자군과 일반집단 간의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통해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고, 다른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구성 타당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상자 전체군 및 하위집단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0 이상을 보고하여 척도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④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지지에 대한 척도(MSPSS)는 Zimet 외(1988)가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를 이용하였다. 사회적지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설문 문항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하였다. 원척도에서는 가족, 친구, 의미가 있는 주변인으로부터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접하는 사람들의 지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을 대신하여 '지역자활센터사람들'로 교체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에서 지역자활센터 사람들로 부터의 지지를 묻는 질문은 3, 4, 8, 11번 문항이며, 친구로부터의 지

지는 6, 7, 9, 12번 문항, 유의미한 주변인의 지지는 1, 2, 5, 10번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는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1이고 하위 척도는 .90에서 .95까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⑤ 정서적· 사회적 관계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변화된 정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서적 관계는 생활의 욕 제고, 무기력감 감소, 건강증진, 자존감 향상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사회적 관계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대인관계 향상과 봉사활동 의욕,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12개 문항의 리커트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생활태도가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⑥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생활 의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였다. 정진경(2003)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 1번~6번은 독립 및 자립의지에 대한 질문을, 7~9번은 일 자체의 중요성과 10~11번에서는 근면과 성공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권영신(2011)이 정진경의 척도에 추가한 생활태도 변화에 대한 척도를 추가하였다. 추가된 생활태도 변화에 대한 척도는 설문 문항 12번~19번까지 8문항이다. 리커트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원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9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등을 통해 내적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2) 자료 분석방법

설문조사에 응답한 314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

는 코딩작업 후 수정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실태와 현황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목적에 따라 단순 빈도분석(frequency)과 교차분석 등을 이용한 기술 통계분석(descriptive)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집단별 t검증, ANOVA,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문항분석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없는 ‘비응답’ 과 ‘무응답’ 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승수 적용과 반올림 관계로 백분율의 합계가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비율을 100.0으로 제시하였다.

제2절 지역자활센터 조사결과 분석

1. 자활사업 참여자 조사 결과 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성별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도는 여성이 75.2%, 남성이 24.8%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4-1> 성별 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남	78	24.8
여	236	75.2
합계	314	100.0

(2) 연령별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별 분포도는 40대가 41.7%로 가장 많고, 50대가 39.2%, 60대 이상이 11.1%, 30대가 5.7%, 20대가 2.2%의 순서를 보였다.

〈표 4-2〉 연령별 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7	2.2
30대	18	5.7
40대	131	41.7
50대	123	39.2
60대 이상	35	11.1
합계	314	100.0

(3) 가족수

조사대상자들의 가족수는 3명이 32.8%로 가장 많고, 2명이 22.9%, 4인 이상이 19.4%, 1인 단독가구가 15.6%, 5명이 6.1%, 6명 이상이 3.2%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3〉 가족수 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1명	49	15.6
2명	72	22.9
3명	103	32.8
4명	61	19.4
5명	19	6.1
6명이상	10	3.2
합계	314	100.0

(4) 학력별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0%로 가장 많고, 중학교 졸업이 18.5%,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이 16.2%, 초등학교 졸업이 13.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4〉 학력별 분포도 (중퇴 및 재학도 졸업에 포함)

구분	빈도(명)	비율(%)
무학	6	1.9
초등학교졸업	42	13.4
중학교졸업	58	18.5
고등학교졸업	157	50.0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이상	51	16.2
합계	314	100.0

(5) 가구주 여부

조사대상자들의 80.6%가 가구주이고, 가구원이 19.4%로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표 4-5〉 가구주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가구주	253	80.6
가구원	61	19.4
합계	314	100.0

(6) 결혼상태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9.4%(이혼 42.0%, 미혼 13.4%, 사별 12.7% 등)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0.6%(기혼 25.8%, 재혼 4.8%)로 나타났다.

〈표 4-6〉 결혼상태

구 분	분류	빈도(명)	비율(%)
배우자 있음	기혼	81	25.8
	재혼	15	4.8
	소계	96	30.6
배우자 없음	미혼	42	13.4
	이혼	132	42.0
	별거	4	1.3
	사별	40	12.7
	소계	218	69.4
합계	314	100.0	100.0

(7) 주관적 건강상태

조사대상자들이 느끼고 있는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54.5%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건강이 좋다는 응답자가 18.5%, 나쁘다는 응답자가 27.0%로서 건강이 좋다는 응답자보다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4-7〉 주관적 건강상태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나쁘다	12	3.8
나쁜 편이다	73	23.2
보통이다	171	54.5
좋은 편이다	48	15.3
매우 좋은 편이다	10	3.2
합계	314	100.0

(8) 질병이나 장애로 겪는 불편 정도

조사대상자들이 근로활동에 있어서 몸에 질병 또는 장애가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21.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났다.

〈표 4-8〉 질병 또는 장애로 겪는 불편 정도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0	15.9
그렇지 않다	69	22.0
보통이다	127	40.4
그렇다	51	16.2
매우 그렇다	17	5.4
합계	314	100.0

2) 자활사업 참여 실태 및 만족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위

조사대상자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위는 조건부수급자가 63.1%, 차상위자가 26.8% 일반수급자가 10.2%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위

구 분	빈도(명)	비율(%)
조건부수급자	198	63.1
차상위자	84	26.8
일반수급자	32	10.2
합계	314	100.0

(2)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의 종류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의 종류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4.8%가 가장 많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가 13.1%, 게이트웨이가 8.9%, 파일럿사업(시범사업)이 3.2%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10〉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의 종류

구 분	빈도(명)	비율(%)
게이트웨이	28	8.9
파일럿사업(시범사업)	10	3.2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	235	74.8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41	13.1
합계	314	100.0

(3)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무 현황

조사대상자들이 사업단에서 근무한 평균 개월수는 15개월(1년 3개월)이며, 1주일 당 출근일은 5일이고, 하루 일당은 평균 33,681원이다. 연령은 최소 20세이고, 최대 65세이며, 평균은 49.2세로 나타났다.

〈표 4-11〉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무 현황

구 분	빈도(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참여 기간(개월수)	279	1	67	15.03	14.503
주당 출근일(일)	280	5	5	5.00	0.000
일당(원)	286	32,300	80,000	33,681.12	6876.382
연령(세)	314	20	65	49.22	8.289
유효수 (목록별)	272				

(4)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의 유형별 분류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유형별 분포도를 살펴 보면, 돌봄사업단이 34.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제조 및 판매사업이 32.5%, 청소사업이 17.2%, 기타(게이트웨이 등)이 12.1%, 주거복지사업이 4.1%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12 >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의 유형별 분류

사업단 명칭	빈도(명)	유형분류	소계(명)	비율(%)			
깨끗한 세상	8	청소사업	54	17.2			
도탈홈크리닝	6						
환경개선사업단	4						
클린사업	15						
특수청소	21						
나우리간병	6	돌봄사업	107	34.1			
복지간병	39						
환자도우미	12						
특수교육실무원	45						
놀이친구친친	5						
민들레 우&돈	5	제조 및 판매사업	102	32.5			
행복담은 도시락	7						
착한가게	4						
수나래	13						
온새미로	4						
엔젤플라워	3						
프리저브드플라워	5						
핸드하우스	8						
행복다육나라	6						
커피큐브	5						
행복자전거	12						
힐링목공	5						
IT 행복나눔	8						
행복전동휠체어	12						
소이캔들	1						
나누미(양곡 유통)	4						
주거복지	5				주거복지사업	13	4.1
주거환경복지	4						
마루그린	4						
파일럿사업(정리수납컨설팅 4명 포함)	10				기타	38	12.1
게이트웨이	28						
합계	314		314	100.0			

(5) 자활사업 참여 중에 변경된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2~3년 동안 자활사업 참여 도중에 사업단이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면, 변경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9.7%이며, 게이트웨이에서 사회서비스형 자

〈표 4-13〉 지난 2~3년 동안 자활사업 참여 도중 변경 경우

구 분	빈도(명)	비율(%)
게이트웨이 → 파일럿사업(시범사업)	18	6.3
게이트웨이 → 사회서비스형	69	24.1
게이트웨이 → 시장진입형	18	6.3
게이트웨이 → 자활기업	3	1.0
사회서비스형 → 시장진입형	20	7.0
사회서비스형 → 자활기업	1	.3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5	1.7
자활기업 → 사회서비스형	10	3.5
없음	142	49.7
합계	286	100.0

활근로로 변경된 비율이 24.1%,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된 경우가 7.0%, 게이트웨이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과 파일럿(시범사업)사업으로 변경된 비율이 각각 6.3%, 자활기업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된 경우가 3.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6) 자활급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자활급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 35.0%이며, 만족한다는 비율 7.6%보다 불만족하다는 비율이 57.3%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14〉 자활급여에 대한 만족정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불만족	69	24.1
불만족	95	33.2
보통	100	35.0
만족	19	6.6
매우 만족	3	1.0
합계	286	100.0

(7) 자활사업장의 작업환경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8.3%, 만족한다는 응답이 25.9%,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25.9%로 비슷하여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정도의 점수로 만족하였다.

〈표 4-15〉 자활사업장 작업환경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불만족	20	7.0
불만족한 편이다	54	18.9
보통이다	138	48.3
만족하는 편이다	60	21.0
매우 만족	14	4.9
합계	286	100.0

(8) 자활사업장의 출퇴근거리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장의 출퇴근거리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이 45.8%, 만족한다는 응답이 43.0%로서 불만족이 12.2%보다 높았다. 대체적으로 출근거리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자활사업장 출퇴근거리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불만족	14	4.9
불만족한 편이다	21	7.3
보통이다	131	45.8
만족하는 편이다	86	30.1
매우 만족	34	11.9
합계	286	100.0

(9) 자활사업장의 업무량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장의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7.0%, 만족한다는 응답이 32.8%로서 불만족하다는 응답 10.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자활사업 업무량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불만족	10	3.5
불만족한 편이다	19	6.6
보통이다	163	57.0
만족하는 편이다	73	25.5
매우 만족	21	7.3
합계	286	100.0

(10) 자활사업장의 근무시간 및 작업 일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장의 근무시간 및 근무 일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43.3%, 만족한다가 50.7%,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5.9%로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자활사업장의 근무시간 및 날짜(일수)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불만족	9	3.1
불만족한 편이다	8	2.8
보통이다	124	43.4
만족하는 편이다	109	38.1
매우 만족	36	12.6
합계	286	100.0

(11) 자활사업장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35.3%, 만족한다가 56.3%,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8.3%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표 4-19〉 자활사업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불만족	9	3.1
불만족한 편이다	15	5.2
보통이다	101	35.3
만족하는 편이다	113	39.5
매우 만족	48	16.8
합계	286	100.0

(12)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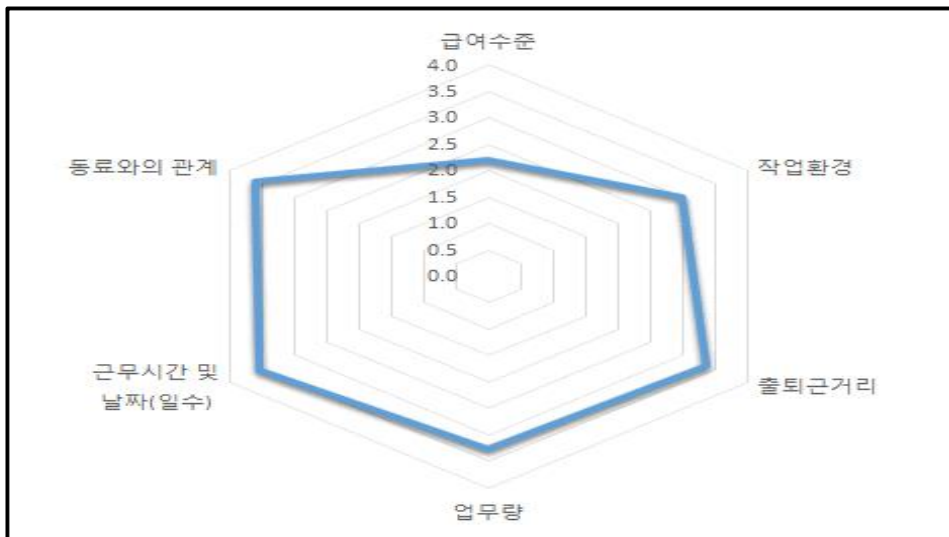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동료와의 관계가 3.62점으로 가장 높고, 근무일수 및 날짜(일수)가 3.54점, 출퇴근거리가 3.37점, 업무량이 3.27점으로 이론적 평균치인 3.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2.21점, 작업환경이 2.9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자활사업 만족도

단위 : 빈도(비율)

구 분	평균(sd)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급여수준	2.21(.94)	76(26.6)	97(33.9)	94(32.9)	15(5.2)	4(1.4)
작업환경	2.98(.94)	20(7.0)	54(18.9)	138(48.3)	60(21.0)	14(4.9)
출퇴근거리	3.37(.96)	14(4.9)	21(7.3)	131(45.8)	86(30.1)	34(11.9)
업무량	3.27(.83)	10(3.5)	19(6.6)	163(57.0)	73(25.5)	21(7.3)
근무시간 및 날짜(일수)	3.54(.86)	9(3.1)	8(2.8)	124(43.4)	109(38.1)	36(12.6)
동료와의 관계	3.62(.93)	9(3.1)	15(5.2)	101(35.3)	113(39.5)	48(16.8)

주) Likert 5점 척도 “매우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 으로 환산한 평균점수(sd)임.



[그림 4-1] 자활사업 만족도

(11) 성별에 따른 자활사업 만족도

성별에 따른 자활사업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활사업 만족도가 높았으나, 근무시간 및 일수에서는 여성참여자의 만족도가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1> 성별에 따른 자활사업 만족도 차이

구 분	성별	빈도	평균점수	SD	t	p
급여 수준	남	62	2.32	1.05	.981	.329
	여	224	2.18	0.91		
작업환경	남	62	3.05	0.93	.658	.511
	여	224	2.96	0.94		
출퇴근거리	남	62	3.52	0.76	1.389	.166
	여	224	3.33	1.00		
업무량	남	62	3.29	0.78	.264	.792
	여	224	3.26	0.84		
근무시간 및 날짜(일수)	남	62	3.53	0.84	-.100	.921
	여	224	3.54	0.87		
동료와의 관계	남	62	3.73	0.91	1.054	.293
	여	224	3.58	0.94		

(12) 연령대에 따른 자활사업 만족도

<표 4-22> 연령대에 따른 자활사업 만족도 차이

항목	연령대	빈도	평균점수	SD	t	p
급여 수준	20대~40대	144	2.14	.87	-1.281	.201
	50대 이상	142	2.28	1.01		
작업환경	20대~40대	144	2.91	.92	-1.262	.208
	50대 이상	142	3.05	.96		
출퇴근거리	20대~40대	144	3.31	.93	-1.097	.273
	50대 이상	142	3.43	.98		
업무량	20대~40대	144	3.25	.78	-.323	.747
	50대 이상	142	3.28	.88		
근무시간 및 날짜(일수)	20대~40대	144	3.53	.82	-.279	.781
	50대 이상	142	3.56	.91		
동료와의 관계	20대~40대	144	3.67	.88	.937	.350
	50대 이상	142	3.56	.98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대를 40대 이하 및 50대 이상으로 나누어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40대 이하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급여수준, 작업환경, 출퇴근거리, 근무시간 및 날짜에서는 50대 이상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자활사업단 유형에 따른 만족도

자활사업단 유형에 따른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작업환경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사업(3.14점)과 주거복지사업(2.38점)에서 만족도 점수 차이가 많았다.

〈표 4-23〉 자활 유형에 따른 자활사업 만족도 차이

항목	자활유형	빈도	평균점수	SD	F	p
급여 수준	청소사업	54	2.52	.86	2.155	.074
	돌봄사업	107	2.08	.89		
	제조 및 판매사업	102	2.18	1.01		
	주거복지사업	13	2.08	.95		
	기타	10	2.40	.97		
작업환경	청소사업	54	2.83	.91	2.500	.043
	돌봄사업	107	3.14	.86		
	제조 및 판매사업	102	2.97	1.01		
	주거복지사업	13	2.38	.87		
	기타	10	2.90	.88		
출퇴근거 리	청소사업	54	3.17	1.19	1.154	.332
	돌봄사업	107	3.33	.95		
	제조 및 판매사업	102	3.48	.83		
	주거복지사업	13	3.54	.97		
	기타	10	3.50	.71		
업무량	청소사업	54	3.13	.93	.740	.565
	돌봄사업	107	3.35	.80		
	제조 및 판매사업	102	3.25	.84		
	주거복지사업	13	3.15	.55		
	기타	10	3.40	.70		
근무시간 및 날짜(일수)	청소사업	54	3.35	1.01	1.295	.272
	돌봄사업	107	3.64	.82		
	제조 및 판매사업	102	3.51	.81		
	주거복지사업	13	3.54	1.05		
	기타	10	3.80	.79		
동료와의 관계	청소사업	54	3.54	1.02	.398	.810
	돌봄사업	107	3.65	.88		
	제조 및 판매사업	102	3.58	.95		
	주거복지사업	13	3.85	.90		
	기타	10	3.70	.95		

* 주: $p < .05$

3) 자활사업의 사회적·정서적 자활성과

(1) 자아존중감 변화

조사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15개월(1년 3개월)이다. 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 사업단 유형별로, 사업종류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이 2.93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복지사업이 2.79점, 기타(시범사업 등)사업이 2.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유형별로는 게이트웨이가 가장 낮고 사회서비스형이 가장 높아서 아래 단계에서 상위단계 사업종류로 전환될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자아존중감의 변화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t	p
연령별	20대~40대	156	2.84	.41	-.371	.711
	50대 이상	158	2.85	.38		
성별	남	78	2.76	.48	-1.895	.061
	여	236	2.87	.36		
가구주 여부별	가구주	253	2.84	.40	-.215	.830
	가구원	61	2.85	.38		
학력별	중졸 이하	106	2.82	.39	-.749	.454
	고졸 이상	208	2.86	.4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6	2.84	.34	-.046	.963
	배우자 없음	218	2.84	.42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F	p
사업단 유형별	청소사업	54	2.80	.37	3.293	.012
	돌봄사업	107	2.93	.36		
	제조·판매사업	102	2.86	.39		
	주거복지사업	13	2.79	.49		
	기타	38	2.67	.45		
사업 종류별	게이트웨이	28	2.58	.46	5.178	.002
	파일럿사업	10	2.78	.27		
	사회서비스형	235	2.89	.38		
	시장진입형	41	2.83	.38		
기초법상 지위별	조건부수급자	198	2.86	.40	1.169	.312
	차상위자	84	2.85	.42		
	일반수급자	32	2.74	.34		

주1) ** p< .01, * p< .05

주2) Likert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 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임.

(2) 직무능력 변화

조사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직무능력이 이론적 평균점수 이상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사업단 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사업 참여자들이 3.31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들이 2.89점으로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4-25> 직무능력의 변화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t	p
연령별	20대~40대	156	3.17	.58	.735	.463
	50대 이상	158	3.12	.56		
성별	남	78	3.06	.53	-1.350	.178
	여	236	3.17	.57		
가구주 여부별	가구주	253	3.15	.56	.143	.886
	가구원	61	3.14	.58		
학력별	중졸 이하	106	3.16	.50	.223	.824
	고졸 이상	208	3.14	.6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1	3.16	.52	.236	.814
	배우자 없음	195	3.14	.59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F	p
사업단 유형별	청소사업	54	3.01	.46	4.207	.003
	돌봄사업	107	3.31	.59		
	제조 및 판매사업	102	3.10	.58		
	주거복지사업	13	2.89	.38		
	기타	38	3.02	.41		
사업 종류별	게이트웨이	28	-	-	.647	.525
	파일럿사업	10	3.02	.41		
	사회서비스형	235	3.14	.58		
	시장진입형	41	3.22	.50		
기초법상 지위별	조건부수급자	198	3.17	.55	1.111	.331
	차상위자	84	3.14	.60		
	일반수급자	32	3.00	.53		

주1) ** p < .01, * p < .05

주2)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임.

(3) 우울감 변화

조사대상자들이 느끼고 있는 우울감 정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학력별, 사업단 유형별로, 사업종류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상보다 중졸 이하가 우울감이 높았고,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단이 1.75점으로 우울감이 가장 낮았고, 주거복지사업단이 2.17점으로 우울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종류별로는 게이트웨이가 가장 높았고, 시장진입형이 가장 낮게 나타나서 하위 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진입할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표 4-26> 우울감의 변화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t	p
연령별	20대~40대	156	1.86	.54	-.533	.595
	50대 이상	158	1.89	.50		
성별	남	78	1.86	.53	-.220	.826
	여	236	1.88	.52		
가구주 여부별	가구주	253	1.87	.52	-.161	.872
	가구원	61	1.88	.52		
학력별	중졸 이하	106	1.96	.48	2.143	.033
	고졸 이상	208	1.83	.5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6	1.83	.45	-1.071	.285
	배우자 없음	218	1.89	.55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F	p
사업단 유형별	청소사업	54	2.03	.46	5.479	.000
	돌봄사업	107	1.75	.46		
	제조 및 판매사업	102	1.82	.52		
	주거복지사업	13	2.17	.56		
	기타	38	2.04	.62		
사업 종류별	게이트웨이	28	2.14	.67	3.186	.024
	파일럿사업	10	1.78	.37		
	사회서비스형	235	1.86	.50		
	시장진입형	41	1.77	.48		
기초법상 지위별	조건부수급자	198	1.86	.53	1.096	.335
	차상위자	84	1.86	.49		
	일반수급자	32	2.00	.54		

주1) ** p < .01, * p < .05

주2) Likert 4점 척도 “매우 드물게(1일 이하) 0점 ~ 거의 대부분(5~7일) 3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임.

(4) 사회적 지지 변화

조사대상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 사업단유형별, 사업종류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2.98점)보다 여성(3.27점)이 사회적지지가 높았다. 사업단유형별로는 돌봄사업(3.41점)이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2.36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종류별로는 시장진입형(3.31점)으로 가장 높고, 게이트웨이(2.56점)가 가장 낮았다. 즉 사업종류에서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진입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사회적 지지의 변화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t	p
연령별	20대~40대	156	3.22	.83	.424	.672
	50대 이상	158	3.18	.89		
성별	남	78	2.98	.82	-2.613	.009
	여	236	3.27	.87		
가구주 여부별	가구주	253	3.20	.88	-.137	.891
	가구원	61	3.21	.80		
학력별	중졸 이하	106	3.08	.85	-1.824	.069
	고졸 이상	208	3.26	.8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6	3.22	.80	.314	.754
	배우자 없음	218	3.19	.89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F	p
사업단 유형별	청소사업	54	3.15	.89	8.367	.000
	돌봄사업	107	3.41	.85		
	제조·판매사업	102	3.29	.72		
	주거복지사업	13	2.36	.94		
	기타	38	2.74	.87		
사업 종류별	게이트웨이	28	2.56	.88	5.989	.001
	파일럿사업	10	3.25	.65		
	사회서비스형	235	3.26	.86		
	시장진입형	41	3.31	.72		
기초법상 지위별	조건부수급자	198	3.22	.83	.534	.587
	차상위자	84	3.20	.97		
	일반수급자	32	3.05	.77		

주1) ** p< .01, * p< .05

주2)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임.

(5)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참여자로부터 지지도 변화

조사대상자들이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참여자들로부터 느끼는 지지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사업단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사업이 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복지사업이 2.62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4-28>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참여자로부터 지지도 변화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t	p
연령별	20대~40대	156	3.08	.85	-1.551	.122
	50대 이상	158	3.24	.93		
성별	남	78	3.08	.83	-.858	.391
	여	236	3.18	.91		
가구주 여부별	가구주	253	3.15	.89	-.293	.769
	가구원	61	3.19	.91		
학력별	중졸 이하	106	3.24	.88	1.200	.231
	고졸 이상	208	3.12	.9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6	3.15	.85	-.132	.895
	배우자 없음	218	3.16	.91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F	p
사업단 유형별	청소사업	54	3.20	.86	2.494	.043
	돌봄사업	107	3.30	.92		
	제조·판매사업	102	3.13	.86		
	주거복지사업	13	2.62	1.03		
	기타	38	2.95	.81		
사업 종류별	게이트웨이	28	2.82	.81	1.623	.184
	파일럿사업	10	3.33	.74		
	사회서비스형	235	3.20	.91		
	시장진입형	41	3.13	.83		
기초범상 지위별	조건부수급자	198	3.15	.87	.048	.953
	차상위자	84	3.18	.98		
	일반수급자	32	3.18	.80		

주1) * p < .05

주2)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임.

(6)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 변화

조사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연령별, 사업단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40대(3.15점)보다 50대 이상(3.34점)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3.47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2.69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9>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t	p
연령별	20대~40대	144	3.15	.81	-2.004	.046
	50대 이상	142	3.34	.79		
성별	남	62	3.16	.69	-.987	.324
	여	224	3.27	.83		
가구주 여부별	가구주	253	3.25	.81	.016	.987
	가구원	61	3.24	.80		
학력별	중졸 이하	98	3.34	.75	1.439	.151
	고졸 이상	188	3.20	.8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1	3.30	.68	.854	.394
	배우자 없음	195	3.22	.86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F	p
사업단 유형별	청소사업	54	3.19	.77	4.650	.001
	돌봄사업	107	3.47	.75		
	제조·판매사업	102	3.11	.83		
	주거복지사업	13	2.69	.88		
	기타	10	3.33	.64		
사업 종류별	게이트웨이	28	-	-	.079	.924
	파일럿사업	10	3.33	.64		
	사회서비스형	235	3.24	.81		
	시장진입형	41	3.26	.83		
기초법상 지위별	조건부수급자	180	3.20	.77	1.165	.313
	차상위자	80	3.36	.88		
	일반수급자	26	3.18	.80		

주1) ** p < .01, * p < .05

주2)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임.

(7)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의지의 변화

조사대상자들의 일에 대한 태도와 자립의지는 이론적 평균점수인 3.0점을 넘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 사업단 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63점)보다 여성(3.87점)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3.99점)이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3.44점)이 다소 낮았다.

<표 4-30>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의지의 변화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t	p
연령별	20대~40대	156	3.75	.63	-1.689	.092
	50대 이상	158	3.88	.69		
성별	남	78	3.63	.56	-2.834	.005
	여	236	3.87	.68		
가구주 여부별	가구주	253	3.82	.66	.331	.741
	가구원	61	3.79	.67		
학력별	중졸 이하	106	3.86	.68	.861	.390
	고졸 이상	208	3.79	.6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6	3.82	.62	.119	.906
	배우자 없음	218	3.81	.68		
구분	구분	빈도	평균점수	SD	F	p
사업단 유형별	청소사업	54	3.67	.76	3.946	.004
	돌봄사업	107	3.99	.62		
	제조·판매사업	102	3.80	.62		
	주거복지사업	13	3.44	.81		
	기타	38	3.70	.58		
사업 종류별	게이트웨이	28	3.61	.58	1.325	.266
	파일럿사업	10	3.96	.52		
	사회서비스형	235	3.81	.68		
	시장진입형	41	3.91	.60		
기초범상 지위별	조건부수급자	198	3.79	.61	.831	.437
	차상위자	84	3.89	.75		
	일반수급자	32	3.74	.70		

주1) ** p< .01, * p< .05

주2)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임.

4) 자활사업 참여자의 문제 행동 및 노후대비 인식

(1) 문제 음주행동

조사대상자들의 문제 음주행동에 대한 조사결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있는 경우가 1주일에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자가 8.0%(25명)으로 나타났다.

<표 4-31> 문제 음주행동

구 분		빈도(명)	비율(%)
술을마시기시작하면중간에그 만들수없었던적이있다.	거의 해당 없음	289	92.0%
	심각한 상황(주에 한 두번에서 거의 매일)	25	8.0%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있다.	거의 해당 없음	310	98.7%
	심각한 상황(주에 한 두번에서 거의 매일)	4	1.3%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있다.	거의 해당 없음	309	98.4%
	심각한 상황(주에 한 두번에서 거의 매일)	5	1.6%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있다.	거의 해당 없음	306	97.5%
	심각한 상황(주에 한 두번에서 거의 매일)	8	2.5%
술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	거의 해당 없음	307	97.8%
	심각한 상황(주에 한 두번에서 거의 매일)	7	2.2%

또한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가 1주일에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자가 1.3%(4명)으로 나타났다.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있는 경우가 1주일에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자가 1.60%(5명)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있는 경우가 1주일에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자가 8.0%(25명)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있는 경우가 1주일에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자가 2.2%(7명)

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 음주행동이 있는 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지 않지만, 본인 및 주변 참여자들의 자활 자립 의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2) 노후 준비수준

조사대상자들이 현재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86.0%이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노후 준비수준이 매우 미흡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노후준비 수준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부족하다	176	56.1
부족하다	94	29.9
보통이다	36	11.5
적당하다	7	2.2
매우 적당하다	1	.3
합계	314	100.0

(3) 노후 준비의 필요성

조사대상자들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응답이 68.5%,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14.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4-33> 노후준비의 필요성

	빈도(명)	비율(%)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다	16	5.1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다	30	9.6
보통이다	53	16.9
종종 생각해 보았다	102	32.5
자주 생각해 보았다	113	36.0
합계	314	100.0

(4) 노후 대비 준비교육

조사대상자들이 노후 대비 준비교육을 받아 본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4.8%, 교육을 몇 번 받아보았다는 응답이 39.2%, 자주 또는 많이 받아보았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상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것을 감안하여 노후대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34> 노후대비 준비교육 경험 여부

	빈도(명)	비율(%)
전혀 없다	101	32.2
거의 받아보지 못했다	71	22.6
몇 번 받아보았다	123	39.2
자주 받아본 편이다	7	2.2
매우 많이 받아보았다	12	3.8
합계	314	100.0

(5) 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

조사대상자들에게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70세부터가 노인이라는 응답이 6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세부터가 노인이라는 응답이 19.4%, 80세부터가 노인이라는 응답이 10.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35> 연령에 의한 노인의 구분

구 분	빈도(명)	비율(%)
50세 부터	8	2.5
60세 부터	61	19.4
70세 부터	204	65.0
80세 부터	34	10.8
65세 부터	6	1.9
75세 부터	1	.3
합계	314	100.0

(6) 노후준비의 주체

조사대상자들에게 노후준비를 누가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9.7%, 국가와 내가 같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36> 노후준비를 위한 주체

구분	빈도(명)	비율(%)
국가가 준비해줘야 한다	7	2.2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156	49.7
국가와 내가 같이 해야 된다	151	48.1
합계	314	100.0

5)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가 자활사업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총 변량(R^2)은 21.4%였으며, F값은 10.792($p < .001$)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수 중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과업중요

성, 직무다양성, 직무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울감과 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자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 감소할수록($\beta=-.242$), 일에 대한 태도점수가 증가할수록($\beta=-.268$) 자활사업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자활 사업 만족 도	(상수)	2.814	.453		6.208	.000***
	우울감	-.015	.004	-.242	-3.617	.000***
	사회적지지	.005	.004	.081	1.225	.222
	자아존중감점수	-.092	.112	-.058	-.829	.408
	과업중요성점수	-.059	.046	-.082	-1.275	.203
	직무다양성점수	-.014	.044	-.019	-.324	.746
	직무자율성점수	.083	.046	.103	1.790	.075
	일에대한태도점수	.245	.060	.268	4.080	.000***

R=462, R제곱=0.214, 수정된 R제곱=0.194
F=10.792, 유의확률=.000

2. 전문가 그룹인터뷰(FGI)

대전광역시 5개 지역자활센터장과 실장, 대전광역시자활센터장과 사무국장, 대전자활협의회의장과 사무국장, 대전시 해당부서 담당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자체에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이념에 따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자활사업이 시·군·구 지역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역할이 불분명하고, 전국적으로 자활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이 10곳 정도에 불과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사업기반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촉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빈곤문제 해결 및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B지역자활센터장).

2)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의 활용이 미흡하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운용하는 기금이다. 그 용도는 2014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에 의하면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비,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C지역자활센터 실장).

자활기금조례가 별도로 제정된 지자체는 118곳으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34곳에 비해 확장되었으나, 시행규칙까지 제정된 지자체는 46곳으로 실제적인 자활기금 운용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별도 조례로 자활기금조례 제정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어야 하며, 시행규칙 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활기금 운영이 현실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A지역자활센터 실장).

대전의 경우 자활기금을 사업단의 점포임대보증금 대출로만 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자활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대전복지재단과의 경우 협의를 통해 자활기금 사용범위와 조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자활기금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함(D지역자활센터 실장).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임. 따라서 자활기금의 사용폭이 참여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 이에 따라 자활기금의 사용폭을 사업자금 대여, 사회보험료 지원, 시설보강비 지원, 참여주민 복지증진비용, 유통망 구축, 자활기업 규모화, 품질향상 지원 등 자활지원을 위해 선제적이면서도 다양한 용도로 기금이 활용되어져야 한다(광역자활센터장).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맞춤형 기초보장제도가 미흡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0년 수급자가 약 156만 명인데 반해, 사각지대 규모는 46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이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는 108만 명이며, 재산기준에 의해 배제된 규모는 298만 명이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규모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09년 156만 명을 정점으로 2010년 약 155만 명, 2011년 146만 명, 2012년 139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2009년 대비 약 17만 명이 감소하였음을 뜻함. 최근 생계를 비판한 자살사건에서 보듯 수급자 규모의 대폭적 감소는 현실적 조건과 동떨어진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빈곤 정책은 국가가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자체에서도 일정한 빈곤정책 수립이 필요한 형국임. 한 예로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생계, 교육, 해산, 장애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37,000명을 목표로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함. 이러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각지대를 일정정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형 기초보장제도가 단순히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지역형 자활근로 등 지방 재정 일자리 정책의 수립도 이루어져야 함.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신선한 행위로, 차상위계층 등 빈곤계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마련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임. 따라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역형 자활근로사업 도입 및 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역자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4)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지난해 송파 3모녀 생계비관형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송파 3모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수급자 신청을 하였어도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생계비관형 자살사건이 줄을 잇고 있고, 2012년 8월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상존하고 있다. 이들 위기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A지역자활센터장).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위기가정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책이 요구된다. 앞에서 제안 지역형 자활근로사업을 활용해도 좋으나, 특화 형태로 한부모, 가정폭력, 비자발적 실업 등 긴급한 사정에 처한 위기가정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등 빈곤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위기가정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연계복지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 일자리 제공 기관으로서의 지역자활센터 지정 및 지속적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다(지역자활센터협의회 회장).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본시설 및 운영지원이 미흡하다.

지역자활센터는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246개 지역자활센터는 사·군·구 지역 단위를 근거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일구어나가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시설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2013년 전국 238개 센터(96% 응답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 무상 및 임대지원이 64%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높은 임대료 부담, 낡은 관공서 건물 활용뿐만 아니라 상담실과 교육장이 없는 곳이 30%에 달하고, 회의실조차 없는 곳이 43%에 달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자활사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편성, 지역자활센터 건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B지역자활센터장).

대전의 5개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은 평균적으로 인건비 90.2%, 운영비 9.8%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시설비, 교육사업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순으로 예산 책정조차 하지 못하는 센터가 있다.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인프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지원과 운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D지역자활센터장).

6)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2013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3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월평균 임금은 사회복지 공무원 임금의 85%, 사회복지관 종사자 임금의 8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이직율이 높고,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활사업 수행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이양된 사업을 중심으로 공무원과의 급여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조례 제정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역자활센터는 지방이양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 급여수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공통 임금가이드라인 마련되어야 한다(D지역자활센터장).

한편으로 전국의 지역자활센터 중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센터수가 70%에 달하고, 그 중 복지수당은 17.6%, 처우개선비는 10.5%만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봉급월액표에서도 낮은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지역자활센터 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수당이나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E지역자활센터 실장).

7)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정서적 자활성과도 평가해야 한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 경로가 2013년부터 변경되었다. 2012년까지는 조건부수급자들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1차적으로 선정 배치되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1단계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과정에 참여하고, 2단계로 희망리본사업⁵⁾에 참여해도 수급이 유지되도록 변경되었다. 즉, 기존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생활의욕이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이 많았지만, 2013년부터는 1단계(취업성공패키지), 2단계(희망리본)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과거에 비해 생활 및 자립의욕이 낮거나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열악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 업무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초기에 매우 열악한 상태로 지역자활사업에 참여하였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차 자활의욕이 높아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이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어느 Client는 “내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실직으로 인한 가족문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자살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만큼 지역자활센터가 경제적인 자활뿐만 아니라 정서적 자활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D지역자활센터장).

5)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빈곤 취약계층의 자활성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돼 대전에서는 사단법인 '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이 위탁받아 대전희망리본본부를 운영 중이다. 희망리본사업은 만 18~64세의 근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업성공패키지 중도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1년간 전담 사례관리자가 1대1 밀착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취업 알선을 지원해 왔다. 특히 대전희망리본본부는 지난해 300명을 대상으로 창업자를 포함, 실업인 158명을 취업시켜 52.7%가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도 8월말 현재 310명이 참여중이며 이 가운데 105명(33.9%)은 이미 취업에 성공했다(중도일보, 2014. 9. 15일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조사내용 요약

1. 자활사업 참여주민 실태조사

1) 인구학적 특성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 분포도는 여성이 75.2%, 남성이 24.8%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도는 40대가 41.7%로 가장 많고, 50대가 39.2%, 60대 이상이 11.1%, 30대가 5.7%, 20대가 2.2%의 순서이며, 가족수는 3명이 32.8%로 가장 많고, 2명이 22.9%, 4인 이상이 19.4%, 1인 단독가구가 15.6%, 5명이 6.1%, 6명 이상이 3.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0%로 가장 많고, 중학교 졸업이 18.5%,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이 16.2%, 초등학교 졸업이 13.4% 등이며, 조사대상자들의 80.6%가 가구주이고, 가구원이 19.4%로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9.4%(이혼 42.0%, 미혼 13.4%, 사별 12.7% 등)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0.6%(기혼 25.8%, 재혼 4.8%)로 나타났다.

2) 자활사업 참여실태 및 만족도

본인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54.5%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건강이 좋다는 응답자가 18.5%, 나쁘다는 응답자가 27.0%로서 건강이 좋다는 응답자보다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근로활동에 있어서 몸에 질병 또는 장애가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21.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위는 조건부수급자가 63.1%, 차상위자가 26.8% 일반수급자가 10.2%의 순서이고,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종류는,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4.8%가 가장 많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가 13.1%, 게이트웨이가 8.9%, 파일럿사업(시범사업)이 3.2%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업단에서 근무한 평균 개월수는 15개월(1년 3개월)이며, 1주일 당 출근일은 5일이고, 하루 일당은 평균 33,681원이다. 연령은 최소 20세이고, 최대 65세이며, 평균은 49.2세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의 유형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돌봄사업단이 3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제조 및 판매사업이 32.5%, 청소사업이 17.2%, 기타(게이트웨이 등)이 12.1%, 주거복지사업이 4.1%의 순서를 보였고,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2~3년 동안 자활사업 참여 도중에 사업단이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면, 변경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9.7%이며, 게이트웨이에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로 변경된 비율이 24.1%,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된 경우가 7.0%, 게이트웨이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과 파일럿(시범사업)사업으로 변경된 비율이 각각 6.3%, 자활기업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된 경우가 3.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동료와의 관계가 3.62점으로 가장 높고, 근무일수 및 날짜(일수)가 3.54점, 출퇴근거리가 3.37점, 업무량이 3.27점으로 이론적 평균치인 3.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2.21점, 작업환경이 2.9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활사업의 심리적·정서적 자활성과

(1) 자아존중감

조사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15개월(1년 3개월)이다. 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 사업단 유형별로, 사업종류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

봄사업이 2.93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복지사업이 2.79점, 기타(시범사업 등)사업이 2.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유형별로는 게이트웨이가 가장 낮고 사회서비스형이 가장 높아서 아래 단계에서 상위단계 사업종류로 전환될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무능력 변화

조사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직무능력이 이론적 평균점수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사업단 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사업 참여자들이 3.31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들이 2.89점으로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3) 우울감

조사대상자들이 느끼고 있는 우울감 정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학력별, 사업단 유형별로, 사업종류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상보다 중졸이하가 우울감이 높았고,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단이 1.75점으로 우울감이 가장 낮았고, 주거복지사업단이 2.17점으로 우울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종류별로는 게이트웨이가 가장 높았고, 시장진입형이 가장 낮게 나타나서 하위 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진입할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4) 사회적지지

조사대상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 사업단유형별, 사업종류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2.98점)보다 여성(3.27점)이 사회적지지가 높았다. 사업단유형별로는 돌봄사업(3.41점)이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2.36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종류별로는 시장진입형(3.31점)으로 가장 높고, 게이트웨이(2.56점)가 가장 낮았다. 즉 사업종류에서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진입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참여자로부터 지지도 변화

조사대상자들이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참여자들로부터 느끼는 지지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사업단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사업이 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복지사업이 2.62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6)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 변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연령별, 사업단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40대(3.15점)보다 50대 이상(3.34점)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3.47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2.69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7)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의지의 변화

조사대상자들의 일에 대한 태도와 자립의지는 이론적 평균점수인 3.0점을 넘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 사업단 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63점)보다 여성(3.87점)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3.99점)이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3.44점)이 다소 낮았다.

8)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감과 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자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 감소할수록($\beta = -.242$), 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증가할수록($\beta = -.268$) 자활사업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활사업 참여자의 문제 행동 및 노후대비 인식

(1) 문제 음주행동

조사대상자들의 문제 음주행동에 대한 조사결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있는 경우가 1주일에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자가 8.0%(2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가 1주일에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자가 1.3%(4명)으로 나타났다.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 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있는 경우가 1주일에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자가 1.60%(5명)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있는 경우가 1주일에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자가 8.0%(25명)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있는 경우가 1주일에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자가 2.2%(7명)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 음주행동이 있는 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지 않지만, 본인 및 주변 참여자들의 자활 자립 의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2) 노후 준비 수준 및 필요성 인식

조사대상자들이 현재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86.0%이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노후 준비수준이 매우 미흡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응답이 68.5%,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14.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3) 노후 대비 준비교육

조사대상자들이 노후 대비 준비교육을 받아 본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교육

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4.8%, 교육을 몇 번 받아보았다는 응답이 39.2%, 자주 또는 많이 받아보았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상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것을 감안하여 노후대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관계자 의견조사

지역자활센터장과 실장, 대전광역시자활센터장과 사무국장, 대전자활협의회장과 사무국장, 대전시 해당부서 담당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자체에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차원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촉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빈곤문제 해결 및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

2)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의 활용이 미흡하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운용하는 기금이다. 대전의 경우 자활기금을 사업단의 점포임대보증금 대출로만 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활기금의 사용폭이 참여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써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 이에 따라 자활기금의 사용폭을 사업자금 대여, 사회보험료 지원, 시설보강비 지원, 참여주민 복지증진비용, 유통망 구축, 자활기업 규모화, 품질향상 지원 등 자활지원을 위해 선제적이면서도 다양한 용도로 기금이 활용되어져야 한다.

3)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등 빈곤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위기가정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연계복지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 일자리 제공기관으로서의 지역자활센터 지정 및 지속적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4)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본시설 및 운영지원이 미흡하다.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은 평균적으로 인건비 90.2%, 운영비 9.8%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비, 교육사업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순으로 예산 책정조차 하지 못하는 센터가 있다.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인프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지원과 운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이직율이 높고,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활사업 수행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이양된 사업을 중심으로 공무원과의 급여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조례 제정을 진행하였지만 지역자활센터는 지방이양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제2절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상 애로사항을 발견하고,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자활사업의 성과로 심리적·정서적인 변화가 유형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까지 나타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자활센터 관계자 의견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이념에 따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시·군·구 지역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역할과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한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4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4개 광역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 등 9개 지역이 자활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⁶⁾.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⁷⁾. 조례의 내용에는 자활지원계획 수립, 사업자금 융자 및 우선구매,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지역특색에 맞는 자활사업 발굴지원 등의 지원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시행규칙도 마련하여 실제적인 조례운용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6)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4개 광역시·도는 경기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이며, 5개 기초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와 안성시이다. 경기도는 시행규칙도 마련하였다.

7) <부록 2>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참고할 것.

2. 자활기금 지원요건의 현실화방안 모색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에 의하면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비,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⁸⁾.

대전광역시로부터 자활기금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대전복지재단은 자활기금을 자활공동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전세점포임차지원금으로 대여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용자규모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별로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율은 연 2%이고, 연체시 14%의 이자가 부과된다. 용자기간은 전세점포임차지원의 경우 1년 또는 2년 단위이며, 최장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전광역시의 자활기금은 2014년 현재 5개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의 전세점포임차지원금으로 1억 9천만원을 대여하고 있다.

자활기금은 기금이 일정한 규모 이상 적립되어야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등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활기금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설정, 2014년 현재 25억원 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통해 지정되어 있는 10여개 활용분야 중 전세 점포임차 지원금 1개 분야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금이 일정한 금액에 도달되기 전까지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계속 적립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금의 적립이 적정규모에 미달하여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만으로는 사업수행 비용이 부족하므로 현재 적립된 기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자활기금을 조속하게 조성하여 본래 취지에

8)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대전복지재단에서 자활기금을 수탁 받아 ‘대전복지재단기금규정’에 의거 이를 운용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및 대덕구는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그리고 중구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유성구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맞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금품의 지급, 사업자금 대여,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생산품의 품질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대표적인 자활사업 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열악하면 이직율이 높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여 매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 및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2014년 자활사업 안내-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에 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직접 지원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자활센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 인건비를 비교하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임금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임금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⁹⁾.

고용복지연계사업인 자활사업은 업무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이처럼 어려운 업무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소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2013년 ‘대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9) 임금가이드라인 비교(2014년 보건복지부지침 기준)

시설구분	기준호봉	월급여	연봉	비율	비고
지역자활센터	4급 7호봉	1,543천원	18,516천원	80%	차액
사회복지생활시설	사회복지사 7호봉	1,940천원	23,280천원	100%	연 4,764천원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본 조례에 의해 구성된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실태와 근무환경을 조사하여 처우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자활사업의 심리적·정서적 자활 성과 제고방안 모색

자활사업의 성과를 취업을 통해서 탈수급율을 높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자활사업 성과 도출에만 맞추다 보면 심리적 및 정서적 자활의 성과를 간과할 수 있다. 경제적 자활의 성과보다 더욱 의미 있는 성과가 심리적 및 정서적 자활이다.

앞의 전문가그룹 인터뷰(FGI)에서 제시된 것처럼 2013년부터는 자활사업 1단계(취업 성공패키지), 2단계(희망리본)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 주민이 3단계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즉, 2013년부터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근로능력이 취약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열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그러나 앞의 제4장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지역자활사업에 참여하였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가 증진되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생활의지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자활사업의 초기 단계인 게이트웨이에서 상위 단계인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이동할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즉, 자활의 과정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심리적·정서적 자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에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를 평가할 때 결과적 측면인 경제적 자활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자활사업이 수행해 왔던 전문적인 사례관리적 접근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서 결과적 측면의 경제적 자활보다 과정적 측면인 심리적·정서적

10) 20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이 양호할 경우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의 <표 4-7>, <표 4-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건강상태는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자가 27.0%였으며, 질병이나 장애로 불편을 겪는다는 응답자도 21.6%나 된다.

자활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5. 맞춤형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문제 음주행동을 갖고 있는 조사대상자가 8%(25명)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86.0%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 대비 준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4.8%였다. 또한 노후 준비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주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문제 음주행동은 본인 및 주변 참여자들의 자활 자립 의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절주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에 보건복지부 소속이거나 지정을 받은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알코올 의존자, 문제 음주자 및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음주폐해 예방 및 건전음주 교육과 홍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알코올상담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각 지역 보건소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동구, 서구, 대덕구에 구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으며¹¹⁾, 중구 및 유성구는 보건소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자활센터는 이 곳 센터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문제 음주자를 대상으로 절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후 대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노년층의 경제적·정서적·사회적 적응, 건강 및 부양문제 등 다양한 노인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현대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서 과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급속한 사회변

11) 대전시 동구의 라이프라인알코올상담센터, 서구의 대전알코올상담센터, 대덕구의 대덕구알코올상담센터가 2014년부터 구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화를 겪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돕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노후 대비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일반 시민에 비하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노후 대비 교육프로그램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대전광역자활센터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노후 대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1), “여성조건부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9호:23-50.
- 권승(2005), “비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권 탈피에 관한 연구:수급권탈피의 결정요인과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전략 논리의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22:179-205.
- 권신영(2011), 빈곤 여성가구주의 사회적 배제가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입과 워먼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교성·강철희(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2호.
- 김수현(2001),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연정(2006), “자활사업의 자활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참여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선(2005). “빈곤 여성가구주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근(2004),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가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완·김문길·이서현(2012), “지역자활센터 현황 및 사업성과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승연(2012), 지역자활센터 조직역량과 자활사업 성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조직네트워크와 성황적합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논문.
- 박정호(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Vol.41(3): 163-184.
- 보건복지부(2011), 통계길잡이.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2012a),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2012.2

(2014), 자활사업 안내 I.

심은희(2002), “빈곤여성 가구주의 심리적 특성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중순(2001),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태영·주은수(2011), “자활사업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영향요인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2권:169-187.

오승환(2001). “저소득 결혼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상록(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21권:105-136.

이상록·진재문(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전북지역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 (봄):241-272.

이영범·남승연(2013), “자활사업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4권 2호:141-162.

이정선(2004),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형하·조원탁(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0호: 217-244.

전경구·최상진·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 D 개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6권 1호. 2001 pp.59-76.

정원오·김진구(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28.

한상진·김용식(2007),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울산 동구 빈곤층의 생애 과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1회:139-171.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and Farley, G. K.(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부록 1>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자활사업의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는 내용은 향후 자활사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연구책임자: 장창수

042) 530-xxxxx

I.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내용

1-1.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게이트웨이 ② 파일럿사업(시범사업) ③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④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⑤ 자활기업(자활공동체)
 ⑥ 기타 (_____)

1-2.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명(소속)을 정확히 기입해주시요.

(_____)

(예: 복지간병사업, 특수교육실무원, 음식관련사업, 집수리, 재활용 등)

1-3. 위의 사업단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부터 (총 _____개월)

1-4. 현재 자활사업 참여로 받는 근로소득은 한 달에 평균 얼마입니까?

월평균 (_____)원 (주 _____회 출근, 일당 _____원)

1-5. 자활사업을 통해 정부로 받는 소득(자활급여)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6. 귀하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조건부수급자 ② 자활특례 ③ 차상위계층 ④ 일반수급자
 ⑤ 기타 (_____)

1-7. 귀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참여하신 총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월부터 (총 _____개월)

1-8. 지난 2~3년 동안 자활사업 참여 도중 다음과 같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게이트웨이 → 파일럿사업(시범사업) ② 게이트웨이 → 사회서비스
③ 게이트웨이 → 시장진입 ④ 게이트웨이 → 자활기업
⑤ 사회서비스 → 시장진입 ⑥ 사회서비스 → 자활기업
⑦ 시장진입 → 자활기업 ⑧ 시장진입 → 사회서비스
⑨ 자활기업 → 사회서비스 ⑩ 자활기업 → 게이트웨이
⑪ 없음

Ⅱ. 사업 참여 과정에 대한 내용

2-1.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칸에 V표를 해주세요.

항 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2 다음은 직무진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칸에 V표를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업무는 다양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업무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업무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업무는 다른 사람의 삶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업무가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나의 업무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업무를 수행할 때 내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자유와 독립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업무를 수행할 때 나의 판단이나 주도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음은 우울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주일간 귀하의 상태와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칸에 V표를 해주세요.

나는 지난 일주일(7일) 동안	매우 드물게 (1일 0회)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5)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6)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①	②	③	④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0)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12)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①	②	③	④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6) 생활이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①	②	③	④
18) 슬픔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4. 자활사업만족도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에서 아래 항목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1) 급여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작업환경	①	②	③	④	⑤
3) 출퇴근 거리	①	②	③	④	⑤
4) 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5) 근무시간 및 날짜(일수)	①	②	③	④	⑤
6) 동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2-5. 다음은 사회적지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칸에 V표를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곤경에 처할 때 주위에 가족 이외의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 이외의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자활센터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자활센터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 이외의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들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문제에 관해 지역자활센터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감정에 관해 염려해주는 내 인생의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자활센터 사람들은 내가 의견을 결정하도록 기여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 친구들과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음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후의 변화된 생활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해당되는 칸에 곳에 V표를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생활의욕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무기력감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약국이나 병원에 가는 일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5)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7)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8)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9)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모든 생활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꿈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활사업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다음은 일과 자활사업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솔직한 생각을 해당란에 V표를 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도(정부지원금 등) 아껴 쓰면서 저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미래 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열심히 일하면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람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가능하면 일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해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직업이 없는 것 보다 낫다	①	②	③	④	⑤
10) 열심히 일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의 기회를 많이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활사업 참여로 자활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활사업은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창업 전망을 높여 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자활사업 참여로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활사업 참여로 자립에 필요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활사업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활사업은 생활의욕을 높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립을 꿈꾸는 사람에게 자활사업을 권유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9) 자활사업 참여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7 다음은 음주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난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와 같은 음주경험을 한 적은 몇 번입니까?

항목	전혀 없음	몇달에 한번	한달에 1~2번	주에 1~2번	거의 매일
1)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술을 마신 후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없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음	지난 1년 동안 있었음		
6)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7)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귀하의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2) 지난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와 같이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항목	예	아니오
1)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2)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①	②
3)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4)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2-9. 귀하는 노후준비 교육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받아보지 못했다 ③ 몇 번 받아보았다
④ 자주 받아본 편이다 ⑤ 매우 많이 받아보았다.

2-10. 현재 귀하의 생활수준을 고려했을 때 귀하의 노후준비 수준은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당하다 ⑤ 매우 적당하다

2-11. 귀하는 평소에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해보셨습니까?

- ①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다 ②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종종 생각해 보았다 ⑤ 자주 생각해 보았다

2-12. 귀하가 생각하기에 몇 살 때부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0세부터 60세부터 70세부터 80세부터 기타()

2-13. 귀하의 노후를 좀 더 편안하기 위해 노후준비를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가 준비해줘야 한다 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국가와 내가 같이 해야 된다

Ⅲ 응답자의 일반사항

3-1. 귀하의 성별은? 남 여

3-2.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세

3-3. 귀하를 포함하여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 명

3-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중퇴 및 재학도 졸업에 표시할 것)

- 무학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이상

3-5. 귀하는 가구주입니까?

- 예 아니오

(가구주란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편이 있어도 본인이 실질적인 가장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3-6. 귀하는 현재 다음 사항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배우자 있음 : ① 기혼 ② 재혼
 배우자 없음 : ① 미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기타()

3-7. 귀하는 근로활동을 하면서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3-8. 귀하는 근로활동에 있어서의 몸에 질병 또는 장애정도가 있어 불편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록 2>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구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3.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광역자활공동체”란 도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공동체를 말한다.
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8.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인증한 자활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공동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1.>
3. 다음 연도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1.>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광역자활센터)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지원 및 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활기업 인증) ① 시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공동체

는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업의 인증요건) 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활공동체 인정서를 발급받고 2년이 지난 자활 공동체일 것
2.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2명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의 조직형태를 갖춘 것
3.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자활공동체 참여로 인해 수급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수급자 인원에 합산
4. 모든 구성원에 대해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지급이 가능할 것
5. 구성원 및 지역자활센터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이나 규약을 갖춘 것
6.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0퍼센트 이상 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것

제3조(자활기업의 인증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자활기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활공동체 인정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구성원 명부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4.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6. 사업현황 및 계획서
 7. 그 밖에 대전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활기업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업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 식의 자활기업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는 신규채용의 5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 ④ 자활기업은 3년마다 심사를 통하여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자활기업의 인증 취소) ① 시장은 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조 각 호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 2. 국·공유지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4. 조달구매 시 생산품 우선 구매
 - 5. 신기술·신제품 개발비 지원
 - 6.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제공
 - 7. 그 밖에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전광역시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활 기업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활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연구보고서 2014-16

대전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방안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1-826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전화 / 530-3545

팩스 / 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주)유선애드플랜 TEL 042-632-3007 FAX 632-8003

ISBN : 979-11-85969-15-2 933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